# 의정활동보고서

제322회 임시회(2021. 3. 5 ~ 3. 16)

경 상 북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22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봄의 기운을 맘껏 누리지 못하는 '춘래불사춘'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및 의료진 여러분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3백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금씩 일상회복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도민들에게 확실한 힘이 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물론 우리 60명 의원님들도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일상이 회복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민생 관련 안건 심의와 더불어 올해 첫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적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봄철을 맞아 산불 등 크고 작은 재난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개학 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 등 당면사항과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도민들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건승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5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 우 현**

# 차 례

Ⅰ. 개 황 ····· 75

Ⅱ. 의사일정 ····· 77

Ⅲ. 의안처리 ····· 83

Ⅳ. 민원처리 ····· 84

Ⅴ. 본회의 보고사항 ····· 86

Ⅵ.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90

□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90

□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 116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131

Ⅶ. 5분 자유발언 ····· 143

□ 김영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143

□ 남용대 의원(농수산위원회) ····· 148

□ 남진복 의원(농수산위원회) ····· 151

□ 김성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154

□ 박태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157

# 부 록

□ 조 례 안(20건) ····· 163

□ 규 칙 안( 1건) ····· 243

□ 동 의 안( 3건) ····· 247

□ 결 의 안( 1건) ····· 267

#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는 2021년 3월 5일 13시 4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월 16일까지 12일간의 회기 동안 2차 본회의와 7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3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3월 5일(금) 오후 13시 40분에 개의하여 세 분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한 후,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휴회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화) 11시에 개의하여 다섯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도민들에게 확실한 힘이 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로 각종 민생관련 안건 심의와 더불어 어느 지역보다 먼저

일상이 회복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23회 임시회로 2021년 4월 23일 오후 13시 4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 Ⅱ. 의사일정

##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21년 3월 5일(금) 13:40

##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21년 3월 5일 ~ 3월 16일(12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42회)

○ 위원회

(단위 : 회)

| 구 분 | 계 | 의회 운영 | 기획 경제 | 행정 보건 복지 | 문화 환경 | 농수산 | 건설 소방 | 교육 | 특 위 | |
|---|---|---|---|---|---|---|---|---|---|---|
| | | | | | | | | | 예결 | 기타 |
| 금 회 | 10 | 1 | 1 | 1 | 1 | 1 | 1 | 1 | - | 3 |
| 누 계 | 758 | 62 | 98 | 90 | 77 | 70 | 73 | 80 | 101 | 107 |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 3. 활 동

### 가. 본회의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3. 5(금)<br>13:40<br>(제1차) | □ 안건처리<br>○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br>○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br>•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원회)<br>•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br>•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br>○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br>○ 휴회의 건(의장제의) | |
| 3. 16(화)<br>11:00<br>(제2차) | ○ 5분 자유발언(김영선, 남용대, 남진복, 김성진, 박태춘 의원)<br>○ 신상발언(김준열, 배진석 의원)<br><br>□ 안건처리<br>○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br>○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br>○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br>○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br>○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br>○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br>○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3. 16(화)<br>11:00<br>(제2차) | ○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br>○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br>○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br>○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br>○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br>○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br>○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br>○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br>○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br>○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br>○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br>○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3. 5(금)<br>11:40<br>(제1차) | ▢ 안건처리<br>○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br>○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

〈기획경제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3. 9(화)<br>11:00<br>(제1차) | ▢ 안건처리<br>○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br>○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br>○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민생氣살리기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의 건<br>• 의사일정 변경<br>○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br>○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계속) |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3.9(화)<br>10:40<br>(제1차) | ▢ 안건처리<br>○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br>○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br>○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br>○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

〈문화환경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3.5(금)<br>16:30<br>(제1차) | ▢ 안건처리<br>○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농수산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3.8(월)<br>10:30<br>(제1차) | ▢ 안건처리<br>○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br>○ 경상북도 사화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br>○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br>○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br>○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 |

〈건설소방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3.5(금)<br>16:10<br>(제1차) | ▢ 안건처리<br>○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 |

〈교육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3. 9(화)<br>10:10<br>(제1차) | ▢ 안건처리<br>○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br>○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br>○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br>○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br>○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br>○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3.5(금)<br>10:10<br>(제2차) | ▢ 안건처리<br>○ 2021년 업무보고의 건(청년정책관 소관)<br>○ 2021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br>○ 2021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br>○ 2021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3. 5(금)<br>10:25<br>(제2차) | ▢ 안건처리<br>○ 주요업무보고의 건 | |

〈윤리특별위원회〉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고 |
|---|---|---|
| 4. 21(수)<br>10:30<br>(제1차) | ▢ 안건처리<br>○ 경상북도의회 김준열의원 징계요구의 건 | |

# Ⅲ. 의안처리

| 구 분 | | 접수 ⓐ+ⓑ+© | 처리 ⓐ+ⓑ | 의결 | | | | | 철회 ⓑ | 계류 © | 비고 |
|---|---|---|---|---|---|---|---|---|---|---|---|
| | | | | 계 ⓐ | 가결 | | 부결 | 폐안 | | | |
| | | | | | 원안 | 수정 | | | | | |
| 계 | | 33 (750) | 30 (729) | 30 (726) | 30 (681) | 0 (45) | 0 (0) | 0 (0) | 0 (3) | 3 (21) | |
| 조례안 | 소 계 | 22 (420) | 20 (406) | 20 (406) | 20 (381) | 0 (25) | 0 (0) | 0 (0) | 0 (0) | 2 (14) | |
| | 의원발의 | 22 (306) | 20 (293) | 20 (293) | 20 (279) | (14) | | | | 2 (13) | |
| | 도지사 제출 | 0 (80) | 0 (80) | 0 (80) | (71) | (9) | | | | | |
| | 교육감 제출 | 0 (34) | 0 (33) | 0 (33) | (31) | (2) | | | | (1) | |
| 규칙안 | | 1 (5) | 1 (5) | 1 (5) | 1 (5) | | | | | | |
| 예산·결산 | | 0 (31) | 0 (31) | 0 (31) | (16) | (15) | | | | | |
| 동의·승인 | | 3 (96) | 3 (94) | 3 (91) | 3 (86) | (5) | | | (3) | (2) | |
| 건의안 | | 1 (4) | 1 (4) | 1 (4) | 1 (4) | | | | | | |
| 결의안 | | 1 (55) | 1 (54) | 1 (54) | 1 (54) | | | | | (1) | |
| 기타안 | | 5 (138) | 4 (135) | 4 (135) | 4 (135) | | | | | 1 (3) | |
| 청원 | | 0 (1) | | | | | | | | (1) | |

※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22회) 의회 누계

# Ⅳ. 민원처리

## 1. 청 원

(단위 : 건)

| 구 분 | 접 수 | | | 처 리 | 처리중 |
|---|---|---|---|---|---|
| | 계 | 이 월 | 금 회 | | |
| 금 회 | | | | | |
| 누 계 | 1 | 1 | | | 1 |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 2. 진 정

### 가. 접 수

(단위 : 건)

| 위원회 | 계 | 행정 | 사회<br>문화 | 교통 | 건설 | 교육 | 경제 | 환경 | 농어업 | 기타 |
|---|---|---|---|---|---|---|---|---|---|---|
| 계 | 1<br>(57) | (12) | (2) | (2) | 1<br>(14) | (5) | (1) | (13) | (2) | (6) |
| 의 회<br>운 영 | | | | | | | | | | |
| 기 획<br>경 제 | 1<br>(10) | (1) | (1) | (2) | 1<br>(3) | | (1) | (1) | | (1) |
| 행 정<br>보건복지 | (11) | (8) | | | (1) | | | | | (2) |
| 문 화<br>환 경 | (13) | | (1) | | | | | (11) | | (1) |
| 농수산 | (8) | (3) | | | (1) | | | | (2) | (2) |
| 건 설<br>소 방 | (11) | | | | (9) | (1) | | (1) | | |
| 교 육 | (4) | | | | | (4) | | | | |
| 특 별<br>위원회 | | | | | | | | | | |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 나. 처 리

(단위 : 건)

| 위원회 | 처 리 | | | | | 처리중 |
|---|---|---|---|---|---|---|
| | 계 | 처리 | 불수리 | 취 하 | 타기관이송 | |
| 계 | 3<br>(57) | 3<br>(57) | | | | |
| 의회운영 | | | | | | |
| 기획경제 | 2<br>(10) | 2<br>(10) | | | | |
| 행 정<br>보건복지 | 1<br>(11) | 1<br>(11) | | | | |
| 문화환경 | (13) | (13) | | | | |
| 농 수 산 | (8) | (8) | | | | |
| 건설소방 | (11) | (11) | | | | |
| 교 육 | (4) | (4) | | | | |
| 특별위원회 | | | | | | |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 안건 접수 : 33건(조례안 22, 규칙안 1, 동의안 3, 건의안 1, 결의안 1, 기타안 5)

## 2. 처리 의안 : 30건

○ 원안가결 : **30건(조례안 20, 규칙안 1, 동의안 3, 건의안 1, 결의안 1, 기타안 4)**

##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22건(원안가결 20, 계류 2)

| 연번 | 접수일 | 발의(제출)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1.02.22. | 김준열 의원 |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계류 |
| 2 | 21.02.22. | 김준열 의원 |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3 | 21.02.22. | 김시환 의원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4 | 21.02.22. | 배진석 의원 |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 〃 |
| 5 | 21.02.22. | 김성진 의원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6 | 21.02.22. | 이동업 의원 |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 〃 |
| 7 | 21.02.22. | 나기보 의원 |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8 | 21.02.22. | 김상조 의원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운동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
| 9 | 21.02.22. | 김상조 의원 |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 〃 |

| 연번 | 접수일 | 발의(제출)자 | 안 건 명 | 비고 |
|---|---|---|---|---|
| 10 | 21.02.22. | 정영길 의원 |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11 | 21.02.22. | 이수경 의원 |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12 | 21.02.22. | 임무석 의원 |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13 | 21.02.22. | 남영숙 의원 |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 〃 |
| 14 | 21.02.22. | 신효광 의원 |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 〃 |
| 15 | 21.02.22. | 신효광 의원 |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16 | 21.02.22. | 한창화 의원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 〃 |
| 17 | 21.02.22. | 박영환 의원 |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
| 18 | 21.02.22. | 박미경 의원 |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 |
| 19 | 21.02.22. | 박용선 의원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 |
| 20 | 21.02.22. | 안희영 의원 |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21 | 21.02.22. | 정세현 의원 |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 |
| 22 | 21.02.22. | 남영숙 의원 |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 〃 |

○ 규 칙 안 : 1건(원안가결 1)

| 연번 | 접수일 | 발의(제출)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1.03.08. | 위원장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 동 의 안 : 3건(원안가결 3)

| 연번 | 접수일 | 발의(제출)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1.02.22. | 도지사 |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 원안가결 |
| 2 | 21.02.22. | 도지사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 〃 |
| 3 | 21.02.22. | 교육감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고유재산 관리계획안 | 〃 |

○ 건 의 안 : 1건(원안가결 1)

| 연번 | 접수일 | 발의(제출)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1.03.08. | 의원장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 원안가결 |

○ 결 의 안 : 1건(원안가결 1)

| 연번 | 접수일 | 발의(제출)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1.03.09. | 이춘우 의원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 기 타 안 : 5건(원안가결 4, 계류 1)

| 연번 | 접수일 | 발의(제출)자 | 안 건 명 | 비고 |
|---|---|---|---|---|
| 1 | 21.03.05. | 의장 |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 2 | 21.03.05. | 의장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
| 3 | 21.03.05. | 의장 |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
| 4 | 21.03.05. | 의장 |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 |
| 5 | 21.03.16. | 안희영 의원 | 징계요구서 | 계류 |

## 4. 조례 공포 사항 : 20건(도 14, 교육청 6)

| 연번 | 공포번호 | 자치법규명 | 공포일 | 비고 |
|---|---|---|---|---|
| 1 | 제4473호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04.01 | 도 |
| 2 | 제4474호 |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 | 〃 |
| 3 | 제4475호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4 | 제4476호 |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 〃 | 〃 |
| 5 | 제4477호 |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 6 | 제4478호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 | 〃 |
| 7 | 제4479호 |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 〃 | 〃 |
| 8 | 제4480호 |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 | 〃 |
| 9 | 제4481호 |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 |
| 10 | 제4482호 |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
| 11 | 제4483호 |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 〃 | 〃 |
| 12 | 제4484호 | 경상복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 〃 | 〃 |
| 13 | 제4485호 |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 | 〃 |
| 14 | 제4486호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 〃 | 〃 |
| 15 | 제4487호 |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1.04.05 | 교육청 |
| 16 | 제4488호 |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 | 〃 |
| 17 | 제4489호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 | 〃 |
| 18 | 제4490호 |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 19 | 제4491호 |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 | 〃 |
| 20 | 제4492호 |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 〃 | 〃 |

# Ⅵ.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 2021년 3월 5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문 순서를 양보해 주신 박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과 일괄질문·답변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문제가 된 사업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목표의 달성이나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 의해 결정된 사업방향을 우리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면밀한 수요예측과 철저한 계획 없이 잘못된 정책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된 대규모 사업과 시설물들이 방문객 유치,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이를 혈세로 보전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현실을 보면서 정책결정의 중요성이 도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중 먼저 전국적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투입된 총예산은 1조 6,800여억 원에 달합니다. 2015년 168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9년 177억 원 적자 등 매년 100억 원대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며,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 관련 금융부채는 7,700여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금융부채 개선을 위해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매수자가 없어 평창 알펜시아는 매년 적자 누적으로 강원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 여러 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 사례, 영주 인삼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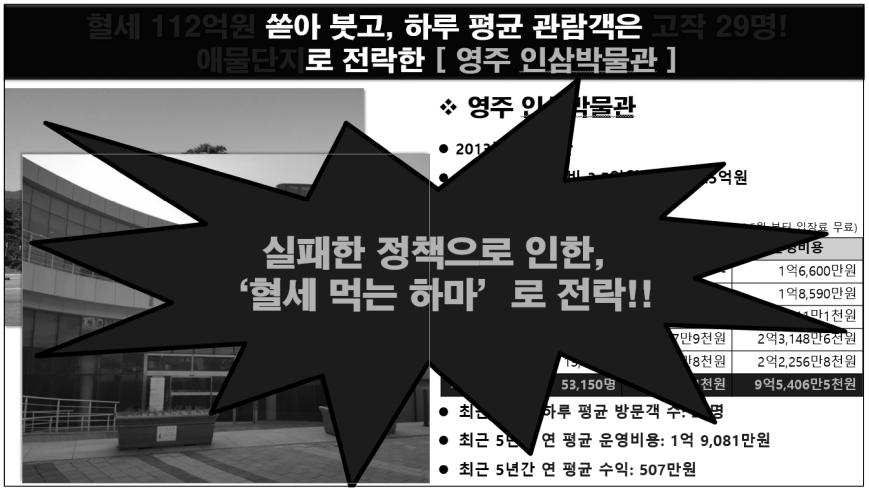


영주 풍기인삼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118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였지만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객은 1일 29명, 연평균 수익은 507만 원, 운영비는 1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혈세를 축내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서 정책실패로 본 사업들은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이용객이 저조하고 적자 운영됨에 따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골칫덩어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업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적자와 운영비 걱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정책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결국 잘못된 정치적 판단, 정책적 결정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자치단체의 재정 부실, 재정 압박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

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 **황병직 의원** 정책 판단 실패로 인한 사업 사례를 전국 사례 중에서 강원도 알펜시아를 꼽았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전국에 저런 실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유독 영주시 인삼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저런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먼저 의원님께서 전국적인 사례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민선 시작이 '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대형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F1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알펜시아, 투자에 비해서 다소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5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은 그래도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병직 의원** 그러면 전국 단위로는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

에서, 23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 심사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게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 **황병직 의원** 거기에 어떤 사업들과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시·군의 경우에는 한 6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 심사를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 심사로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 그다음에 어떤 시설설치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 **황병직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시·군에서 의뢰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투자심사 기준에 맞게끔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방금 본 의원이 사례로 짚은 저런 실패한 사업들은 없다? 혹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투자심사 사업은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계획과 부합하는지, 또 그 시의 재정여건, 또 주민수혜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 **황병직 의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황병직 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고, 본 의원의 질문에 투자심사 기준에 맞게끔 23개 시·군에서 투자한, 지방재정 투자심사한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 없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일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병직 의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주시 형산~신당 생태공원 화면 띄워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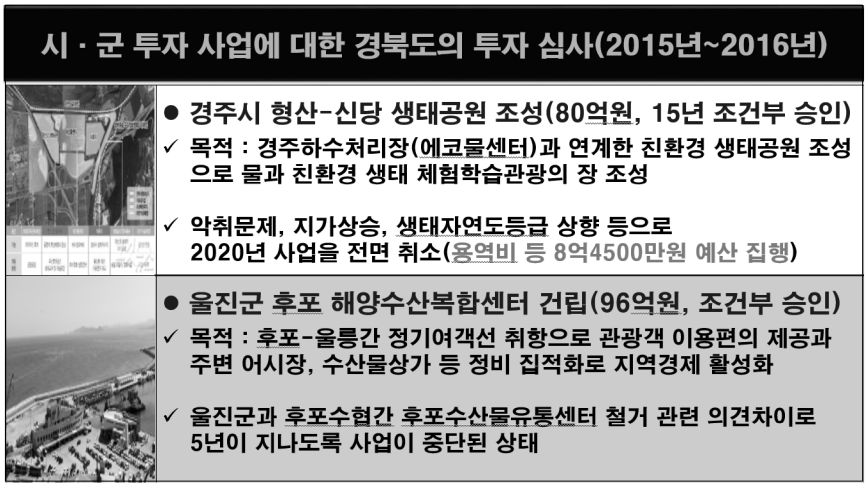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황병직 의원** 2015년도에 도의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주시 형산~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0억이 계획된 사업으로서 목적은 경주하수처리장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으로 물과 친환경 생태 체험학습관광의 장 조성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 악취문제와 지가상승,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 등으로 2020년 사업을 전면 취소함에 따라서

용역비 등 8억 4,500만 원이 낭비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투자심사를 한 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 **황병직 의원**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이 길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실장님, 최근 3년간 경상북도와 시·군의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454건의 4조 112억 원의 투자 사업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에서 90%, 410건을 조건부 또는 적정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심사한 사업 내용들 중에서도 방금 사례로 든 사업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도정질문이 끝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이력 조사와 검토를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시고, 향후 또 투자심사 의뢰가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 또 강화된 심사기준을 통해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적극 공감합니다.

○ **황병직 의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황병직 의원** 전대미문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로 인해 우리 국민과 도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역대급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은 마이너스 1%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운용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재정을 걱정해 주셔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로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일반회계가 한 9조 3천억 됩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 사업과 도비 매칭,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를 포함하면 이게 한 70% 정도 됩니다. 70% 되고 또 법적·의무적 경비가 한 18% 되고 이렇게 다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한 8.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8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사·공단 출연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그다음에 초·중·고 무상급식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게 소방 추가 인건비 한 230억 들어가야 하고 청사 이전에 평균 한 870억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신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사업의 효과를 봐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더욱더 가속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병직 의원** 경상북도가 어렵다는 건 본 의원이 도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23개 시·군의 재정 상황은 우리 경상북도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반적으로 시·군은 우리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황병직 의원** 시·군, 여유가 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황병직 의원** 영주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 지금 7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 영주시의 재정 상황을 비교해 보면 영주시는 정말,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2021년도 영주시 총예산**

(단위 : 백만원)

| 총예산(이월액포함) | | 자체예산 | | 보조사업예산 | | 비고 |
|---|---|---|---|---|---|---|
| 예산액 | 비율 | 예산액 | 비율 | 예산액 | 비율 | |
| 992,038 | 100% | 471,380 | 47.5% | 520,658 | 52.4% | |

**2021년도 영주시 보조사업 예산의 보조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예산액 (이월액포함) | 보조비율 | | | | | | 비고 |
|---|---|---|---|---|---|---|---|---|
| | | 국고 | 균특 | 기금 | 특별교부 | 시도비 | 시군비 | |
| 예산액 | 520,658 | 174,883 | 48,573 | 34,969 | 99 | 84,132 | 177,998 | |
| 비율 | 100% | 33.6% | 9.3% | 6.7% | 0.0019% | 16.2% | 34.2% | |

*영주시

잠시 그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1.5%, 평균 45.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

니다. 226개 기초단체 중 166번째 위치해 하위 26.5%에 속하는 아주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일반회계·특별회계, 보전지출 기금을 모두 더한 2021년도 총예산이 9,920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5,200여억 원을 빼고 나면 자체 예산 4,713억 원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4,713억 원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 존재하는 필수적인 비용인 인건비, 물건비 등에 3,831억 원 정도를 제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불과 수백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나마 이것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6개년 계획도를 보면 향후 앞으로 총 2조 1,300억 정도가 순수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영주시 지방중기재정계획 중**

(단위 : 백만원)

| 재원 | 총사업비 | 기투자 | 연도별투자계획 | | | | | | |
|---|---|---|---|---|---|---|---|---|---|
| | | | 소 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계 | **4,195,626** | 428,679 | 3,753,348 | 565,616 | 564,536 | 626,463 | 649,559 | 642,183 | 709,795 |
| 의무 | 2,915,646 | 386,870 | 2,523,977 | 402,393 | 391,271 | 384,658 | 393,577 | 408,809 | 543,274 |
| 재량 | 1,279,980 | 41,809 | 1,229,371 | 163,223 | 173,265 | 241,805 | 253,982 | 230,574 | 166,521 |
| 국고보조금 | 1,417,976 | 51,280 | 1,366,696 | 163,255 | 173,816 | 202,395 | 215,927 | 240,850 | 370,453 |
| 균특보조금 | 239,741 | 146,010 | 93,731 | 32,702 | 24,972 | 15,330 | 13,877 | 4,763 | 2,088 |
| 기금보조금 | 42,506 | 1,159 | 41,348 | 5,614 | 6,469 | 7,925 | 7,250 | 8,361 | 5,729 |
| 시도비 | 357,573 | 55,996 | 302,077 | 61,329 | 54,581 | 49,136 | 53,049 | 47,829 | 36,155 |
| 시군구비 | **2,137,847** | 174,735 | 1,954,313 | 302,722 | 304,705 | 351,685 | 359,460 | 340,375 | 295,370 |
| (민자 등) | 137,025 | 0 | 137,025 | 3,455 | 1,368 | 1,382 | 1,395 | 61,982 | 67,443 |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황병직 의원** 그러면 재정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재정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시·군이 경상북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여유 있는 시·군에서 영주시는 빼 주십시오. 영주시는 정말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봤듯이.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황병직 의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강력한,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고 또는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하시고 또 체납세 징수를 더 강력히 해서 세수를 마련하셔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영주시에 향후에 도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의원님,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말씀대로 영주시도 전국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도도 어렵고 영주시도 어려운데, 다만 영주시는 아직까지 빚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빚이 한 1조 2억 가량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요. 앞으로 영주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영주시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재정 위기가 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병직 의원** 빚이 없으니 다행인데, 빚이 곧 있을 것 같은데 빚이 있으면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감사합니다.

○ **황병직 의원** 다음 질문은 우리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께 제가 이 질문 요지를 보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경청해 주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성실히 잘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조성사업은 적서동 일원에 총사업비 3,165억 원, 136만㎡ 규모로 2026년 준공계획이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소속 이주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조성된 모든 산업단지는 2020년 6월 말 기준 모두 1,220곳, 여의도 면적의 492배 규모인 14억 2,833㎡로 이중 축구장 3,920개 규모, 2,798만 9,000㎡가 미분양 상태에 있어 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미분양

산업단지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가장 최신자료인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년 12월 공시, 2020년 3분기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개소의 미분양 산단이 있고, 두 번째로 많은 489만㎡의 미분양 면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3분기 전국산업단지 시도별 현황**

(단위 : 천㎡, %)

| 구분 | 단지수 | 지정면적 | 관리면적 | 산업시설구역 | | | | |
|---|---|---|---|---|---|---|---|---|
| | | | | 전체면적 | 분양대상 | 분양 | 미분양 | 분양률 |
| 국가 | **국가 총47개** | **806,620** | **487,218** | **285,324** | **250,185** | **241,590** | **8,595** | **96.6** |
| 일반 | **일반 총676개** | **531,882** | **524,473** | **322,608** | **255,299** | **236,468** | **18,831** | **92.6** |
| 도시첨단 | **도시첨단 총30개** | **8,297** | **8,291** | **4,267** | **1,979** | **1,356** | **623** | **68.5** |
| 농공 | **농공 총472개** | **76,716** | **76,223** | **57,967** | **56,066** | **53,543** | **2,523** | **95.5** |
| 총합 | **총1225개** | **1,423,515** | **1,096,205** | **670,166** | **563,529** | **532,957** | **30,572** | **94.6** |
| 서울 | 총3개 | 3,207 | 3,207 | 2,301 | 2,301 | 2,115 | 186 | 92 |
| 부산 | 총36개 | 43,636 | 43,594 | 23,068 | 21,615 | 19,480 | 2,135 | 90 |
| 대구 | 총21개 | 44,513 | 42,378 | 24,080 | 18,637 | 17,745 | 892 | 95 |
| 인천 | 총16개 | 21,930 | 21,924 | 13,592 | 12,801 | 12,359 | 442 | 97 |
| 광주 | 총13개 | 32,748 | 26,224 | 16,682 | 12,801 | 12,801 | - | 100 |
| 대전 | 총4개 | 71,288 | 71,288 | 9,960 | 6,185 | 6,185 | - | 100 |
| 울산 | 총28개 | 90,239 | 81,943 | 61,313 | 57,794 | 57,489 | 305 | 99 |
| 세종 | 총17개 | 9,666 | 9,663 | 6,465 | 5,305 | 5,086 | 219 | 96 |
| 경기 | 총184개 | 243,917 | 128,050 | 75,198 | 64,196 | 62,911 | 1,285 | 98 |
| 강원 | 총73개 | 25,873 | 23,683 | 15,641 | 13,810 | 12,353 | 1,457 | 89 |
| 충북 | 총125개 | 82,423 | 76,199 | 43,992 | 34,061 | 33,047 | 1,014 | 97 |
| 충남 | 총159개 | 113,475 | 109,923 | 69,270 | 59,097 | 54,387 | 4,710 | 92 |
| 전북 | 총88개 | 131,775 | 88,783 | 58,070 | 50,123 | 45,725 | 4,398 | 91 |
| 전남 | 총104개 | 226,168 | 128,288 | 89,009 | 76,911 | 71,282 | 5,629 | 93 |
| 경북 | 총147개 | **143,499** | **115,381** | **82,656** | **64,999** | **60,102** | **4,897** | **92** |
| 경남 | 총205개 | 136,702 | 123,250 | 77,772 | 62,190 | 59,187 | 3,003 | 95 |
| 제주 | 총6개 | 2,456 | 2,427 | 1,097 | 703 | 703 | - | 100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 12. 16.

거기에다 조성을 추진 중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을 포함한 대통령 공약 7개 국가산단 후보지의 총면적을 더하면 1,729만㎡나 됩니다. 경북도 또한 신공항 이전지 군위·의성에 각 100만 평씩, 총 200만 평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하면 축구장 3,347개 넓이, 2,390만㎡가 됩니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 모든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3,057만㎡의 80%에 이르는 신규 산업단지가 향후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7개 국가산단 후보지**

| 지 역 | 유치업종 | 개발 방향 | 면적 |
|---|---|---|---|
| 강원<br>원주 | 의료기기 | •혁신도시, 기업도시(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연세대(원주) 등과 연계되는 의료기기업체 및 R&D시설을 유치하여 「첨단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 732,000㎡<br>(22만평) |
| 충북<br>충주 | 바이오헬스 | •바이오헬스 핵심산업(정밀의료) 관련기업 유치 및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주-충주-원주를 연결하는 바이오벨트의 중추적 역할 수행 | 2,243,000㎡<br>(68만평) |
| 경북<br>영주 | 첨단베어링 | •관련 앵커기업(베어링아트), 연구기관(하이테크 베어링시험평가센터) 등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하고 연관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 조성 | 1,362,801㎡<br>(41만평) |
| 충북<br>청주 | 바이오 | •바이오인프라(6대 국책기관, 바이오기업, 연구기관 등)와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로 개발 | 6,750,000㎡<br>(204만평) |
| 세종 | 첨단<br>신소재. 부품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첨단 신소재. 부품 상용화 거점조성 | 3,300,000㎡<br>(100만평) |
| 충남<br>논산 | 전력지원체계 | •육군훈련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존 국방관련 공공기관에 더해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국방 Biz-Complex 조성 | 1,032,000㎡<br>(31만평) |
| 전남<br>나주 | 에너지 | •한전 등 에너지 관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 | 1,880,000㎡<br>(57만평) |

*국토부 등 각 지자체

더욱이 지난해 8월 23일 자 디지털타임즈 '제조업 심장 국가산단이 식어간다.'는 기사에 따르면 국가산단 가동률이 70% 초반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탓도 있지만 대부분의 산단이 노후하고 신산업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돼 대한민국의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끌던 국내 제조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즈 2020년 8월 3일자 '제조업 심장 국가산단이 식어간다' 기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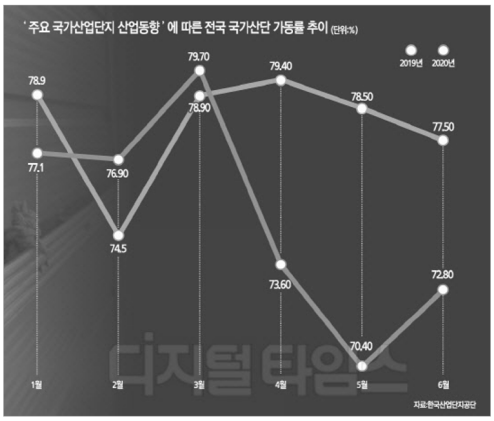

이러한 현황을 살펴보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도 그 누구도 분양이 성공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주의 11만 시민들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만 되면 1만 1,000명 인구 증가와 연간 835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희망을 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3,165억 원으로 최종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는 3.3㎡당 120만 원의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 3.3㎡당 50만 원으로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영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인 국비 355억 원을 포함한 1,850억 원을 시가 책임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영주시민과 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가산단을 조성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영주시에서 1,8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주시민들과 경상북도 도민들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 시는 사업지구 외 진입도로 건설비 289억여 원도 부담하게 됩니다. 5년간 2,139억 원은 작은 기초지자체인 영주시의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금액입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총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합계 | 국비(기반시설) | 지방비(분양가 차액) | 사업시행자(개발비용) |
|---|---|---|---|
| **316,500** | 35,466 | 149,534 | 131,500 |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영주시 재정지원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계 | **185,000** | 5,683 | 6,666 | 64,369 | 67,956 | 40,326 | - |
| 지방비 | 149,534 | 5,683 | 6,666 | 54,369 | 52,956 | 29,860 | - |
| 국 비 | 35,466 | - | - | 10,000 | 15,000 | 10,466 | - |

| 구분 | | 금액 |
|---|---|---|
| 지구외 진입도로 | 외곽순환도로 약 2.15㎞ | **28,951** |

**최종 영주시 부담 금액 2,139억원**

*영주시 및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잘 들으셨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전국 상황을 아주 소상히 밝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황병직 의원** 그래도 이 국가산단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방금 황병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할 것 같은데 도지사로서 한 말씀 드리면, 공단이 지금 많이 남아돕니다. 사실 우리 구미 5공단도 아직 잘 안 팔리고 있고 포항의 국가공단도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부지역의 국가산단이 처음 영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가 그대로 계산하면 평당 한 120만 원에 만들게 됩니다.

○ **황병직 의원** 예, 맞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120만 원에 만들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영주시에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그 공사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LH는, 방금 문재인 대통령 일곱 군데 국가공단 만드는 데 LH가 다 수지타산이 맞다 이래서 들어가는데 LH가 우리를 검토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잘못하면 국가산단을 포기할 입장이었습니다, 사업자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렵지만 개발공사에서 시작을 하자 이래서 개발공사 사장은 '사실상은 적자다, 이것은.' 어렵다는데 도지사가 그걸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영주시가 부담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걱정을 저도 하고 있고 또 미래에 또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병직 의원** 지사님, 지사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사실관계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바로 잡고 가면, LH공사에서 '이 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라고 해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황병직 의원** 개발공사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은 되었지만 개발공사에서 적자를 보고 공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총공사비의 4.4%, 약 190억

원 정도는 보전을 해 주는 걸로 협약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이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적자를 보고, 이윤을 남기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 협약서를 작성된 것을 보시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개발공사에서 그러면 돈이 남는데 왜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오랫동안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50만 원으로 책정해도 분양이 안 되면, 개발공사에서 1,300억을 선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2년, 3년 흘러가면 그 이자 때문에 잘못하면 회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다. 이 말씀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 **황병직 의원** 제가 지금 지사님하고, 오늘 국가산단에 대한 도정질문은 제가 준비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알겠습니다.

○ **황병직 의원** 저 또한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근 2년여 동안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알고 있고, 협약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알겠습니다.

○ **황병직 의원** 지사님, 조금 전 본 의원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1,850억 중에서 국비 355억 원을, 영주시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영주시비로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세상천지에 국가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국비 지원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너희들 시비로 돈을 줘야 된다라고 이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개발공사로서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번 천번 양보를 해서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 355억 원에 대해서는 저는 경상북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 **도지사 이철우** 그에 대해서는 국비…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는 한 국비를 못 받을 리는 없으니까…

○ **황병직 의원** 그렇지요.

○ **도지사 이철우** 국가공단에 지정이 만약에, '23년도에 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황병직 의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 **황병직 의원** 개발공사에서 국비 355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시비를 달라고 했으니, 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국비 확보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사님 들어오시고 국비 확보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355억, 국토부에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355억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나서 주시면 355억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협약서에, 영주시에다가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에 도장을 찍으

라고 하니 힘 없는 영주시가 억장이 무너질 판 아닙니까? 그러니 이 부분은, 355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책임지시고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지사님께서 반드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영주에서 1,495억을 부담하면 개발공사에서 국비를, 어쨌든 이것은 확보하는데 지정이 안 되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황병직 의원**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영주시와 개발공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발공사에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 355억을 확보하는 데 영주시도 노력을 하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 지역구의 존경하는 박형수 국회의원님도 노력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황병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 앞서서 미분양 상태, 또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덜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니 오늘 도정질문 마치고 가서 우리 영주시민분들에게 “355억은 지사님이 책임지고 국비 확보하기로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여기 영주시민이고 도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국가공단으로 지정됐는데 국가에서 줄 돈을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도지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하겠습니다.

○ **황병직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850억 중에서 355억을 빼면 약 한 1,500억 원이 되고, 지구 외 사업단지가 한 300억 되면 결국 국비 355억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순수 시비 지원이 1,800억 정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장호 실장님께서 영주시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많이 어려우니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라는 그 답변을 들으셨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황병직 의원** 그래서 355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적극적으로 영주시의 부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국가공단 내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국가공단 밖에 있는 것은…

○ **황병직 의원** 한 285억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맡아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것을 제가 즉답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했는데 국가공단 밖에 있는 것은, 시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는 함께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병직 의원** 예, 그러면 정리를 하면 355억은 지사님과 시장님,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서 확보하고, 그 외에 국가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도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우니 사업지구 외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 한 280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데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겠다?

○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어느 시·군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균형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병직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에 7개 국가산단이 동시에 시장에 공급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공급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계획하고 있는 국가산단은 조기 착공을 통해서 조기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황병직 의원** 그러자면 영주시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의원님이 걱정하듯이 저희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반드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23년도에 지정 받으면 '27년도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라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또 북부지역은 공단이 부족합니다, 그때 가면. 그러니까

바이오산단, 또 방금 베어링, 이것 전부 4차 산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병직 의원** 걱정이 많아서 자꾸 제가 지사님에게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조기 착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양을 하도록, 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투자유치실이나,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산단 미분양을 위해서 분양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도지사 이철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어링 단지 44만 평인데, '27년 이후거든요, 물론 그전부터 분양을 하겠지만. 베어링 이게 특화된 산업이고 4차 산업이고, 앞으로 AI가 들어오면 다 베어링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베어링이 정말 필요한, 이것은 개발하면 할수록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때 제 이야기가 얼마나 맞는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괜찮은 산업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 **황병직 의원** 예, 국가산단과 관련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또는 부탁에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부분, 또 각오를 밝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주시에 돌아가면 지사님의 말씀을 소상히 전하고, 또 이게 당장 내년에 시행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 5, 6년 뒤에 사업이 추진되고 준공되기 때문에 지사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 영주시에서는 지사님을 적극 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황병직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황병직 의원** 지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지역 정치권의 책임 관련 질문은 이철우 지사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영남권 신공항 추진 당시 대구·경북, 부·울·경, 5개 시·도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한 것도 분노를 금치 못할 일인데 대구·경북 시·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결정한 지역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때부터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롯이 지역의 역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 우리는 가덕도와 상응하는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동일한 지원을 받아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덕도 특별법 사태는 TK 정치권의 무능함과 정치력 부재를 보여 주는 뼈아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도의원님 대부분이 여야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

에서 가덕도 특별법 통과는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의 사활이 걸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덕도 특별법 통과 후 지금까지 우리가 단체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명한 것이 있습니까? 겨우 하나를 들자면 지난 2월 23일 이철우 지사님과 의장님께서 대구시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한 유감 표명과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대구·경북의 정치 지도자로서 그 역할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매우 컸던 만큼 지사님의 정치력과 역량에 실망한 것도 사실이나 도민들은 마지막으로 지사님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통과를 보장받기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이 앞장서고 고우현 의장님, 우리 도의원들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정당·소속을 떠나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3백만 도민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입니다. 지사님이 중심이 되고 대구·경북 정치인과 시·도민들이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사님, 의장님, 국회에 가셔서 삭발하십시오. 대구·경북 시·도·기초의원 모두가 함께 국회로 가서 우리의 뜻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종식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님!

국내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지방세입은 감소하고 보건·사회복지 등의 사회안전망 지출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벌써 세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고,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를 비롯한 23개 시·군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계획 아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3월 5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적해 있는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 도정과 민생을 더욱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당면해 있는 현안보다는 오히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만을 부각시키고, 지속적인 언론 노출을 통해 행정통합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행정통합 논의보다는 현안에 집중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먼저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안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사회복지비 등 한정된 일반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응지방비로 충당하느라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318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역차별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한 건의 및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떠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경북도에서 발간하는 5분 발언 추진 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기준과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행안부 교부세과로 수시 방문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히며 '완료'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조치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아니라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재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부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산정 방식과 기준들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최대한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상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건의했다는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전에 해마다 상반기에 작성하여서 9월 초에 행안부에 건의하는 절차에 따라 이미

작성해 놓은 자료일 뿐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처럼 행안부에 건의했다며 조속히 완료처리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신규 지표를 통해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도내 23개 시·군의 재정여건과 현황들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도출한 지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의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수행 및 토론 등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행안부 담당자를 찾아가 개별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 전략이나 분석보고서는 있습니까?

**1-1. 행안부 재정분석결과 (경상북도)**

| 분 야 | 2017 | 2018 | 2019 | 유형평가 | 전국평균 |
|---|---|---|---|---|---|
| 지방세수입비율 | 19.90% | 19.05% | 18.72% | 23.81% | 24.52% |
| 자체경비비율 | 신규지표 | 신규지표 | 5.14% | 6.39% | 10.21 |
| 의무지출비율 | 55.59% | 55.90% | 55.80% | 54.82% | 51.31% |

행안부에서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세수입 비율이 2017년 19.9%에서 2019년에는 18.7%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2019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 평균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자체 경비비율도 5.1%로 전국 평균 10.2%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지요.

이에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55.8%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복지지출 및 국가정책 사업에 들어가는 의무지출은 많고,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1-2. 행안부 재정분석결과 (구미시)**

| 분 야 | 2017 | 2018 | 2019 | 유형평가 | 전국평균 |
|---|---|---|---|---|---|
| 지방경비비율 | 신규지표 | 신규지표 | 10.00% | 16.09% | 10.21% |
| 의무지출비율 | 64.72% | 66.39% | 72.95% | 54.14% | 51.31% |

도내 시·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의 경우 자체경비 비율이 2019년도의 경우 10%로 전국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무지출 비율은 73% 수준으로 전국 평균 51%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의무지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과 동력이 경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 1-3. 보통교부세 현황(11년 ~19년)

### 보통교부세 산정액 추이

(단위 : 억원, %)

| 시도별 | 보통교부세 산정금액 | | | | | | | | | |
|---|---|---|---|---|---|---|---|---|---|---|
|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연평균 증가율 |
| 전국 | 257,755 | 291,884 | 314,480 | 318,845 | 320,509 | 331,444 | 374,671 | 423,382 | 474,537 | 7.9 |
| 경북 | 42,929 | 48,228 | 51,834 | 52,163 | 50,994 | 51,878 | 57,810 | 64,340 | 72,852 | 6.8 |

### 보통교부세 시도별 비중

(단위 : %)

| 시도별 | 보통교부세 산정금액 | | | | | | | | | |
|---|---|---|---|---|---|---|---|---|---|---|
|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연평균 증가율 |
| 광역시 | 11.4 | 11.5 | 11.7 | 11.7 | 12 | 11.6 | 11.1 | 11.9 | 12.2 | 7.0 |
| 광역도 | 88.7 | 88.5 | 88.2 | 88.4 | 87.9 | 88.2 | 88.8 | 88.2 | 87.8 | △1.0 |
| 경북 | 16.7 | 16.5 | 16.5 | 16.4 | 15.9 | 15.7 | 15.4 | 15.2 | 15.4 | △7.8 |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7.9%에 달합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6.8% 수준으로 대구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경북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북도가 주체가 되어 시·군별로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원 확보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보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도내 시·군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기준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액 산정기준과 방식 차이로 인해 실제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사정을 촘촘히 점검하고, 융통성 있게 경북도가 각별히 챙기고 큰 틀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행정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는 재정안정화와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의 균형,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도 각 시·군의 실제 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군의 재정 사정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의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정형평화 기능이 서로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차등보조율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사람과 상생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추진 방향에서도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인재를 키워내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산업생산, 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 역량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경북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2. 실업률 (2017~2020년)

(단위 : %)

| 시도별 | 2017 | 2018 | 2019 | 2020 | 차 |
|---|---|---|---|---|---|
| 계 | 3.7 | 3.8 | 3.8 | 4.0 | 0.3 |
| 서울 | 4.5 | 4.8 | 4.4 | 4.6 | 0.1 |
| 부산 | 4.6 | 4.1 | 3.7 | 4.2 | -0.4 |
| 대구 | 4.0 | 4.4 | 3.7 | 3.9 | -0.1 |
| 인천 | 4.6 | 4.3 | 4.4 | 4.6 | 0.0 |
| 광주 | 2.9 | 3.8 | 3.7 | 3.9 | 1.0 |
| 대전 | 3.4 | 4.2 | 4.2 | 4.4 | 1.0 |
| 울산 | 3.5 | 4.6 | 4.2 | 4.2 | 0.7 |
| 세종 | 2.3 | 2.3 | 2.7 | 2.8 | 0.5 |
| 경기 | 3.9 | 3.8 | 3.8 | 4.0 | 0.1 |
| 강원 | 2.6 | 2.9 | 3.6 | 3.9 | 1.3 |
| 충북 | 2.2 | 2.4 | 3.1 | 3.2 | 1.0 |
| 충남 | 2.8 | 3.1 | 2.9 | 3.5 | 0.7 |
| 전북 | 2.5 | 2.7 | 2.7 | 2.5 | 0.0 |
| 전남 | 3.2 | 2.8 | 2.6 | 2.4 | -0.8 |
| 경북 | 2.8 | 4.1 | 3.9 | 4.0 | 1.2 |
| 경남 | 2.9 | 3.0 | 3.8 | 4.0 | 1.1 |
| 제주 | 1.9 | 2.0 | 2.1 | 2.5 | 0.6 |

지사님은 취임 때부터 일자리와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경북의 실업률은 2017년도 2.8%에서 2020년도에는 4%로 전국 시·도 중 가장 가파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경상북도를 떠나고 있고, 경북의 청년들도 2019년에는 1만 1,000명이나 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볼 때, 경상북도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이 얼마나 절실한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경북도가 주도하고 시·군과 지역대학, 기업이 함께 협업하여 지역혁신플랫폼을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서 선점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난해부터 혁신 역량을 고민할 시간은 많았습니다. 지역의 힘을 키우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먹거리와 정책을 진중히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북도는 또 늦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교육부가 공모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응모해서 경남, 충북, 광주·전남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와 함께 응모했으나 선정되지 못했고, 올해도 다시 도전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경상대 등 17개 대학이 참여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통교양을 이수하고, 학생들은 LG전자와 센트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받는 등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북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공허한 메아리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았나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포항과 구미의 경우 경북도의 대표적인 산업주도 도시로서 그 명성이 퇴색되고 있고, 역량 있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보도자료 ( '21. 3. 4)**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4.(목)】

**경북도-대구사-지역대학 공동으로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본격화**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및 업무협약**
**- 대구·경북,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
**- 대학의 역량이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플랫폼 운영**

경상북도는 2021년 도정의 핵심으로 대학과 기업 등 민간 역량을 행정에 융합한 연구중심 행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학연 협력의 대표모델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역 혁신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3월 4일 경북대학교에서 경상북도, 대구시,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경북 교육청,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13개 기관들이 참여하여, '21년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제야 경상북도는 지역혁신을 위해서 공동운영체제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지역혁신의 범위를 대학·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지역혁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우리 도가 보유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 촉진 및 원팀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거창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한 사업별 기본계획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업무보고 자료 외에는 실제 어떠한 방법과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상북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경북만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하고 5G 기반의 VR·AR 디바이스 개발, 특히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과 같은 신사업에 성공해야 하며, 매년 정원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작년에, 존경하는 이칠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당시 해당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경북도는 이 조례를 주도하여 추진할 주무부서 선정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북도가 얼마나 준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독일의 도르트문트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의 알맹이 없이 언론보도만 앞세우고, 타 시·도가 이미 시작한 방식으로는 결코 혁신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공동운영체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분명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르트문트시를 벤치마킹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주제를 어떤 목표로 얼마동안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이외에 경북도가 지역혁신을 위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직업계고 졸업자 시도별 졸업자 후 상황**

(단위 : 개교, 명, %)

| 구분 | 학교수 | 졸업자 | 취업현황 | | 진학자 현황 | | 입대자 | 제외인정자 | 미취업자 |
|---|---|---|---|---|---|---|---|---|---|
| | | | 취업자 |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률 | | | |
| 계 | 74 | 14,689 | 4,809 | 52.2 | 5,104 | 34.7 | 257 | 114 | 4,405 |
| 서울 | 36 | 6,421 | 1,437 | 46.9 | 3,241 | 50.5 | 75 | 40 | 1,628 |
| 부산 | 19 | 4,812 | 1,250 | 53.7 | 2,370 | 49.3 | 70 | 44 | 1,078 |
| 대구 | 28 | 5,887 | 1,763 | 50.4 | 2,202 | 37.4 | 126 | 60 | 1,736 |
| 인천 | 13 | 2,859 | 691 | 47.2 | 1,313 | 45.9 | 65 | 18 | 772 |
| 광주 | 12 | 2,777 | 881 | 55.3 | 1,113 | 40.1 | 41 | 29 | 713 |
| 대전 | 11 | 2,476 | 573 | 45.8 | 1,163 | 47.0 | 41 | 21 | 678 |
| 울산 | 2 | 196 | 56 | 53.3 | 84 | 42.9 | - | 7 | 49 |
| 세종 | 108 | 18,502 | 4,812 | 48.4 | 8,195 | 44.3 | 138 | 222 | 5,135 |
| 경기 | 34 | 2,903 | 781 | 50.0 | 1,212 | 41.7 | 96 | 33 | 781 |
| 강원 | 26 | 4,150 | 1,078 | 52.1 | 1,975 | 47.6 | 44 | 62 | 991 |
| 충북 | 37 | 4,458 | 1,310 | 51.7 | 1,799 | 40.4 | 69 | 56 | 1,224 |
| 충남 | 37 | 4,054 | 935 | 47.2 | 1,893 | 46.7 | 126 | 54 | 1,046 |
| 전북 | 47 | 4,933 | 1,284 | 49.5 | 2,140 | 43.4 | 95 | 105 | 1,309 |
| 전남 | 50 | 5,049 | 1,805 | 59.6 | 1,722 | 34.1 | 246 | 50 | 1,226 |
| **경북** | **33** | **4,323** | **1,211** | **49.7** | **1,760** | **40.7** | **90** | **35** | **1,227** |
| 경남 | 9 | 1,509 | 262 | 47.3 | 929 | 61.6 | 6 | 20 | 292 |
| 제주 | 576 | 89,998 | 24,938 | 50.7 | 38,215 | 42.5 | 1,585 | 970 | 24,290 |

경상북도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020년 교육부 조사에서 59.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경

북도 관내에 취업한 학생 수는 39.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도권 및 타 시·도로 취업하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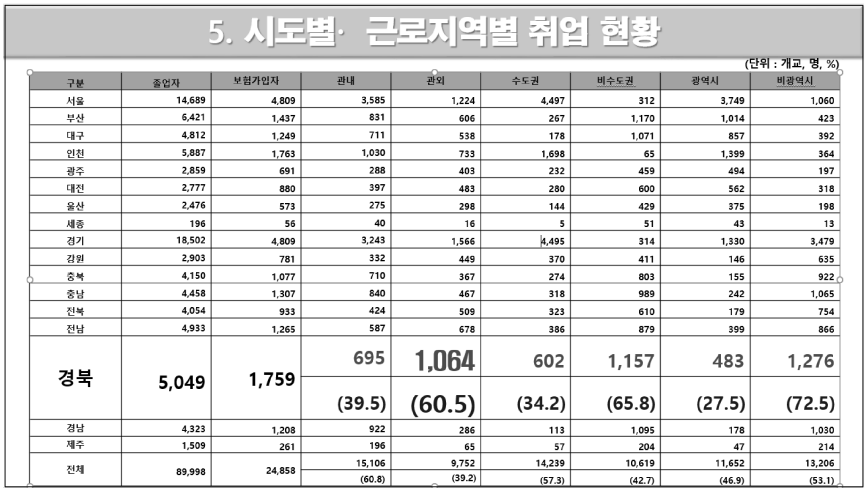

5. 시도별· 근로지역별 취업 현황

(단위 : 개교, 명, %)

| 구분 | 졸업자 | 보험가입자 | 관내 | 관외 | 수도권 | 비수도권 | 광역시 | 비광역시 |
|---|---|---|---|---|---|---|---|---|
| 서울 | 14,689 | 4,809 | 3,585 | 1,224 | 4,497 | 312 | 3,749 | 1,060 |
| 부산 | 6,421 | 1,437 | 831 | 606 | 267 | 1,170 | 1,014 | 423 |
| 대구 | 4,812 | 1,249 | 711 | 538 | 178 | 1,071 | 857 | 392 |
| 인천 | 5,887 | 1,763 | 1,030 | 733 | 1,698 | 65 | 1,399 | 364 |
| 광주 | 2,859 | 691 | 288 | 403 | 232 | 459 | 494 | 197 |
| 대전 | 2,777 | 880 | 397 | 483 | 280 | 600 | 562 | 318 |
| 울산 | 2,476 | 573 | 275 | 298 | 144 | 429 | 375 | 198 |
| 세종 | 196 | 56 | 40 | 16 | 5 | 51 | 43 | 13 |
| 경기 | 18,502 | 4,809 | 3,243 | 1,566 | 4,495 | 314 | 1,330 | 3,479 |
| 강원 | 2,903 | 781 | 332 | 449 | 370 | 411 | 146 | 635 |
| 충북 | 4,150 | 1,077 | 710 | 367 | 274 | 803 | 155 | 922 |
| 충남 | 4,458 | 1,307 | 840 | 467 | 318 | 989 | 242 | 1,065 |
| 전북 | 4,054 | 933 | 424 | 509 | 323 | 610 | 179 | 754 |
| 전남 | 4,933 | 1,265 | 587 | 678 | 386 | 879 | 399 | 866 |
| 경북 | 5,049 | 1,759 | 695 | 1,064 | 602 | 1,157 | 483 | 1,276 |
| | | | (39.5) | (60.5) | (34.2) | (65.8) | (27.5) | (72.5) |
| 경남 | 4,323 | 1,208 | 922 | 286 | 113 | 1,095 | 178 | 1,030 |
| 제주 | 1,509 | 261 | 196 | 65 | 57 | 204 | 47 | 214 |
| 전체 | 89,998 | 24,858 | 15,106 | 9,752 | 14,239 | 10,619 | 11,652 | 13,206 |
| | | | (60.8) | (39.2) | (57.3) | (42.7) | (46.9) | (53.1) |

경북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경북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인재를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북도와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타 지역 교육청의 경우 인재의 역량을 더 키워 지역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선정되면서 고교-대학 연계 위탁과정을 개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교육청과 도본청, 지역대학이 혁신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겠다, 미래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만 보여 주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를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혁신의 핵심은 지역인재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에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술 및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원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 본청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업계고 학생 및 지역인재들이 경상북도를 떠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인재를 경북에서 키우고 양성하여 지역혁신인재로 만들기 위해 도교육청은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 운영에 대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구미시에서 2021년 10월 8일(금)~14일(목)까지 개최됩니다. 그리고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2021년 10월 20일(수)~25일(월)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미시에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니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올림픽 개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그러나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성화 봉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오픈한 전국체육대회 공식 SNS채널을 소개하면서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정부의 백신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어 10월에 대회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접종이 10월까지 원활히 끝날지, 접종받은 백신이 효과가 충분히 있을지, 한 번의 접종으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해방될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방역예산 국비지원 요청, 대회 참가선수·임원 대상 코로나19 예방백신 우선 접종 건의, 사업별 데드라인 설정과 예산 집행 최소화로 연기·취소 시 손실 축소 등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좀 더 촘촘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체육회는 방만한 경영도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인건비가 없어서 다른 예산을 부랴부랴 전용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경상북도체육회 인건비 예산은 14억 6,375만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번 지적해서 인력 조정을 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인건비 지급 현황을 받아 보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틀림없이 10월이나 11월쯤에 가서는 인건비가 없다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1~2월 인건비에는 아직 공석인 사무처장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선출됨에 따라 여기에 인건비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달에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전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지난해 민선 김하영 회장체제로 체육인 독립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전임 박의식 사무처장의 임기 논란 파문으로 큰 혼란에 빠진 바가 있습니다.

1년의 공백을 끝내고 새로운 사무처장이 뽑힌 만큼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는 등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계의 병폐 및 체육회 시스템 개선과 기부금 사업의 확장, 기업 유치 활동, 조직혁신 등 사무처장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체육회 규약에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잡음과 공정한 선출을 위해서라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낙하산 논란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전국체육대회가 2006년 이후 15년 만에 경북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기·취소가 됐을 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구미시와 구미시민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의 방만 경영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체육회가 인건비 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문제가 재발된다면 경상북도는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해 주시고 경영 개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신임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에 경상북도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무처장 채용방식을 공개채용 등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정부와 지방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여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1년 3월 5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도민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육지 속의 교통섬' 영양군의 현실을 표와 동영상으로 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표1** 영양군 인구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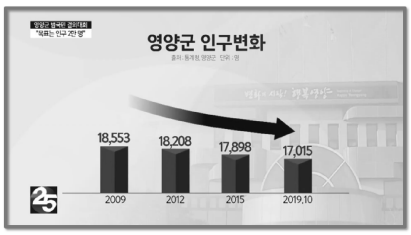


영양군의 면적은 서울의 1.3배, 〔표 1〕에서 보듯이 '70년대에 7만여 명이던 인구는 1만 7,000이 무너진 상태이며 고속도로, 4차로, 철로, 3로가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또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민간단체로 구성된, 31번 국도 4차로 확장을 위한 '영양군민통곡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표2** 영양군 교통(도로) 관련 언론 보도자료 현황

- 육지 속의 교통 섬 영양군의 '통곡' 외면 할 텐가('19.8.27. 대구일보)
- '모든 도로가 편도 1차로 영양 주민들 오지 설움'('19.8.20. 한겨레)
- '도로교통 개발 소외, 서러운 영양군'('17.2.15. 경북매일)
- '공포의 도로 영양 31번 국도'('18.7.9. 경북일보)
- '상주 영덕 고속도로 특수 못 누려 4차로 하나 없는 교통 섬'('19.4.25. 매일신문)
- '모든 도로가 왕복 2차로' 영양 군민들 "여기도 사람이 삽니다"('19.8.26. 한겨레)
- 고속도로·4차로·철도 전국유일 '3路' 없는 영양('17.3.15. 영남일보)

앞서 보신 영상과 '19년 8월 20일 자 한겨레신문에 '모든 도로가 편도 1차로, 영양주민들 오지 설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이 수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보도하고,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정부와 경상북도에 건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영양군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영양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영양군민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선출직에 있는 정치권 모두가 죄인입니까?

표3 치료가능 사망률 하위 시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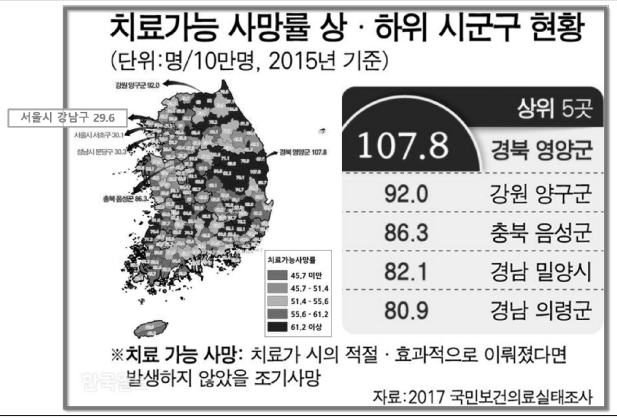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영양군은 서울 강남구의 3.6배로 전국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오로지 척박한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고향을 지킨 대가로 목숨에 대한 가치를 3.6배나 차별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영양군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에서 유일하게 4차선이 없는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입니다. 정부와 경상북도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

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정부와 경상북도의 허울뿐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영양군의 경제는 무너지고 인구는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인구도 적고 교통수요도 적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을 생명선과 같은 4차선 도로 하나 갖고 싶다는 것이 영양군민들의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과도한 욕심입니까?

어르신들은 저만 보면 "이 의원, 내가 죽기 전에 영양에 4차로 한번 보고 죽겠나?"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예, 가능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사님, 교통 오지 영양군민들의 자존심 좀 살려주십시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영양군민들은 염치가 있어 철로를 건설해 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육지 속의 교통섬으로 소외된 경북 북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추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표4 국가간선도로망 계획(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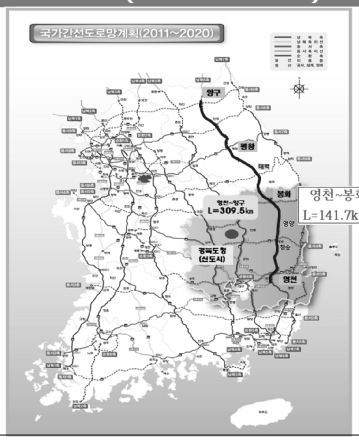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6축 고속도로는 '99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북7축, 동서9축 간선도로 중 남북6축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에 이르는 309.5㎞ 구간으로 총사업비 5조 1,000억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입니다. 경북은 영천에서 출발하여 청송, 영양, 봉화로 이어지는 141.7㎞의 구간이 해당됩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12년 10월 선배 의원이신 존경하는 이상용 전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김관용 전 도지사의 답변입니다.

(동영상 상영)

다음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제11대 경북도의회가 개원한 '18년

7월에 첫 업무보고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해 1월, 5분 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표5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추진 경과**

| 년. 월 | 내 용 |
|---|---|
| 2007.11 | 4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반영 |
| 2012.6 | 경북도·강원도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공동건의문 채택 |
| 2013.6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 선정 건의 |
| 2019.3 |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 반영 건의 |
| 2019.11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남북6축(영천~양구)고속도로 건설 검토<br>(* 강원도 계획 미반영) |

앞서 동영상과 〔표 5〕에서 보시다시피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에 대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답변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또는 건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혀 발전된 내용이 없고, 본 의원이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와 강원도, 관련 10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협의체 구성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노력이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겨우 '22년도 기본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건의한 수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의만 열심히 했지 결과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과 남북7축 고속도로 중 포항~영덕 구간의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하여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6축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 북동부 지역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축으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림 및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으나 교통망이 취약하여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어렵고, 이웃 시·군 간의 교류도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최근 숲과 산림 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힐링 문화의 확산은 영양을 비롯한 경북 북동부권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의 주민들이 남북6축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대구·경북 통합에 따른 경북 북동부권의 소외된 민심을 다독이고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 공약에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예타 면제 사업을 공약으로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앞의 동영상처럼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양읍 무창리~기산 간 지방도 917호선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는 도로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하고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지방도 917호선은 '95년 11월 8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방도로서 26년 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영덕군에서 시작하고 영양군을 경유하여 울진군에 이르는 낙동정맥의 핵심구간입니다. 영양 구간은 영양읍에서 수비면까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917호선 중 영양읍 무창리~기산리 구간은 GS 제2영양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건설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MOU 체결로 총길이 3.9㎞, 폭 8.5m의 2차로 확·포장 공사 기본 설계는 마친 상태지만, 풍력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리되어 사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방도 917호선은 도로선형이 매우 불량하고 비포장으로 인해 가까운 거리를 일원면으로 20㎞를 우회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표6 영양읍 무창-기산 간 지방도917호선 건설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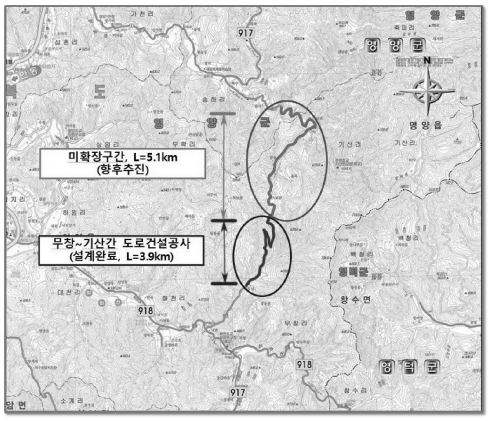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도로가 도지사가 지정한 26년이 된 지방도 917호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인지 농로인지 도저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월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도저히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도 917호선은 낙동정맥과 나란히 하고 있어 깨끗한 자연과, 울창한 숲과 계곡이 함께하는 구간입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덕, 영양, 울진에 이르는 구간에 경치와 풍광이 좋은 계곡과 자연휴양림, 산림체험장, 풍력발전단지 등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 공간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표7 낙동정맥 지방도 917호선 주변 산림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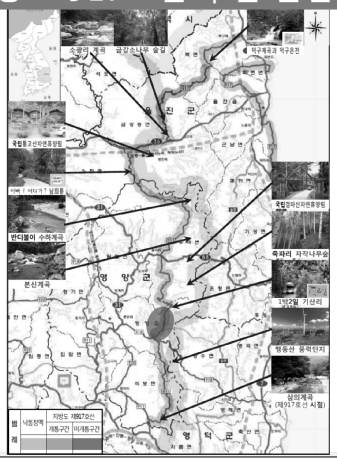

또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도 917호선이 지나가는 수비면 죽파리 일대는 국내 최대의 자작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양 자작나무 숲은 '93년에 30ha 규모의 국유림에 조림된 수령 30년생의 자작나무 숲 군락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작나무 숲까지 약 4㎞의 계곡은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 숲으로 대표적인 산림휴양 공간입니다. 자작나무 숲과 낙동정맥을 이용하는 영양군민들의 불편은 물론, 경북도민과 대구, 부산, 서울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앞의 영상에서 본 지방도 917호선을 위험하게 지나다녀야 합니다.

표8 영양 자작나무 숲

이철우 지사님, 31번 국도 4차선 확장은 정부에서 경제성이 없어 2차선 선형개량을 위해 KDI에서 심의를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지방도는 경상북도가 지정·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지정된 지 26년이나 된 917호선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도 영양군민들에게 소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양군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도 917호선 지정과 관리 주체인 경상북도에서 조속한 확·포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거창한 건물을 지어달라거나 기업을 유치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군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남북6축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도 917호선을 확·포장해 달라는 영양군민들의 간절한 통곡의 염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양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크게 받아들여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Ⅶ. 5분 자유발언

□ 2021년 3월 1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영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촉구≫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웃집 기준이 엄마는 올해 아이 셋 중 두 아이를 중·고등학교에 보내느라 교복값으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며 “허리가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시·도는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경북은 안 해 주느냐며 원망을 합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으로 소득이 시원찮은 어느 한 가정,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 딸 교복비에 애를 태우다 겨우 지역의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교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교복비입니다.

지난해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의 일환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논의한 바 있으나 양 기관이 비용분담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학생 교육복지에 대한 책임 회피와 홀대에 참으로 유감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시·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매번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신 말씀, 허언은 아니시지요?

이철우 지사님! 학생들은 경북의 도민이 아닙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손을 놓고 계신 것입니까?

2015년 3만 명을 웃돌던 경북의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2020년 약 2만 2천여 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라면 어쩌면 경북에 교복을 입혀 줄 학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때가 되어서야 지원할 생각이신지요?

현재 경북과 광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는 교복 구입이나 원격수업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1> 타 시·도 교복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현황

| 시도명 | 조례 제정 (공포일자) | 교복 지원 현황 | | | 비고 |
|---|---|---|---|---|---|
| | | 시행 시기 | 지원대상 | 지원방법 | |
| 서울 | '20.12.31 | 2021 | 중1, 고1 | 현금(제로페이) | 30만원 한도 內 교복, 스마트기기 등 구입 가능 |
| 부산 | '18.11.14 | 2019 | 중1 | 현물 | |
| 대구 | '20.10.05 | 2021 | 중1, 고1 | 현물 | |
| 인천 | '18.10.01 | 2019 | 중1, 고1 | 현물 | |
| 광주 | × | - | - | - | 저소득층 지원 |
| 대전 | '19.02.15 | 2019 | 중1, 고1 | 현물 | |
| 울산 | '19.11.07 | 2020 | 중1, 고1 | 현물 | |
| 세종 | '18.12.31 (전부개정) | 2019 | 중1, 고1 | 현물 | 타법개정*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 지원 |
| 경기 | '18.10.02 | 2019(중1) 2020(고1) | 중1, 고1 | 현물 | |
| 강원 | '19.06.07 | 2020 | 중1, 고1 | 현물 | |
| 충북 | '20.04.10 | 2021 | 중1, 고1 | 현물 | |
| 충남 | '18.10.30 | 2019 | 중1 | 현물 | |
| 전북 | '18.11.16 | 2019 | 중1, 고1 | 현물 | |
| 전남 | '18.12.20 | 2019(중1) 2020(고1) | 중1, 고1 | 현물 | |
| 경북 | 조례 준비중 | - | - | - | 상임위 계류 |
| 경남 | '19.06.07 | 2020(중1) 2021(고1) | 중1, 고1 | 현금 | |
| 제주 | '19.04.10 | 2019(중1) 2020(고1) | 중1, 고1 | 현물 | |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18.10.30공포」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1」로 타법개정
※ 인천, 대전은 본청과 교육청 조례 각각 有. 울산, 충남, 경기, 경남은 본청에서 조례 제정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력에 따른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경북 도내에서도 포항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은 교복을 지원 또는 지원 예정에 있으나 나머지 14개 시·군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2〉 경북 시군의 교복 지원 현황

| 구분 | 지원대상 | 금액 |
|---|---|---|
| 포항 | 중고 신입생 | 현금(30만원) |
| 경주 | 저소득층 신입생 | 현금(30만원) |
| 김천 | 중고 신입생 | 현금(30만원) |
| 안동 | 한부모, 조손가족 신입생<br>-전체 신입생 예정 | 현금(30만원) |
| 구미 | 저소득층 신입생<br>-전체 신입생 예정 | 현금(30만원) |
| 영주 | 저소득층 신입생 | 현금(30만원) |
| 영천 | 한부모, 조손가족 신입생 | 현금(30만원) |
| 상주 | 한부모, 조손가족 신입생 | 현금(20만원) |
| 문경 | - | - |
| 경산 | 저소득층 신입생(고) | 현금(20만원) |
| 군위 | - | - |
| 의성 | 중고 신입생 | 상한권고가액 이하 |
| 청송 | 중고 신입생 | 현금(30만원) |
| 영양 | - | - |
| 영덕 | - | - |
| 청도 | - | - |
| 고령 | - | - |
| 성주 | - | - |
| 칠곡 | - | - |
| 예천 | - | - |
| 봉화 | 중고 신입생 | 현금(30만원) |
| 울진 | 중고 신입생 | 현금(35만원) |
| 울릉 | 저소득층 신입생 | 현금(50만원, 5명) |

이것이 임종식 교육감의 '교육 공공성 강화'이며 이철우 도지사의 '아이세상'이 지향하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청소년은 경북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기회균등이 제공돼야 합니다. 그런데 경북의 학생들은 다른 시·도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따뜻한 경북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군 소멸을 걱정하고 인구감소 대책을 고민하는 경북에서 말로만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부터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빛나는 학창 시절의 시작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즉시 협의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신입생들에게 교복 한 벌 해주면 아이들도 부모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3월 1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남용대 의원(농수산위원회) ◎

≪울진군 원전 3, 4호기 재개 촉구≫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9월 본 의원이 원자력 관련 도정질문을 한 지 2년 만에 이 자리에서 울진 원전 3·4호기 문제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사님, 2018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전) 산업부 장관 백운규 씨가 정부 공식발표를 통해 탈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로 안전성, 경제성, 핵연료 폐기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낮은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원전 자체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요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지사님 답변은 부실시공보다는 계획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은 질문의 의도와 답변의 내용에 괴리가 있었습니다만 폐일언하고, 작금의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1년 2월 28일 자로 공사 기간이 종료되는 3·4호기 사업을 힘없는 군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22일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지사님!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원전이라도 하나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울진군민들이 고통의 신음을 토해내고 있을 때 지사님은 무얼 하셨습니까?

1개 군을 통째로 내어 주더라도 공항만이 살길이라고 동분서주하시고 행정통합만 얘기하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승인을 해준 앞으로 2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탈원전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정권이 뒤집어져야 재검토될 사안이라 판단하시고 공항과 같은 커다란 국책 사업과 행정통합을 통해 내공과 몸집을 키워 내년 대권에 도전하려 하신 것은 아닌지?

정권 재창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면 그래도 지사님이 '원전에 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이해하겠지만 아니라면 철저한 무관심이라고밖에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북도가 울진원전 3·4호기 문제, 그리고 월성 맥스터, 삼중수소 문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해 진정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울진군민들은 지사님만 믿고 숨 고르기 자세로 들어갑니다. 흉식호흡을 할 것인지 복식호흡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지사님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태양, 풍력, LNG로 원전에너지를 대체하고 2050년 탄소중립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정부는 선언했습니다. 어디에다 태양열 시설을 하죠? LNG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비 7,800억이 들어간 친환경 3·4호기 사업은 안 되고

40% 정도밖에 공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삼척 화력발전소는 계속 사업을 하게 하는 이 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탄소 줄인다면서 화력발전소 해체하겠다고 한 것이 이 정부요, 세계기후협약에 가입하고 미세먼지 잡는 데 동참하겠다고 한 것도 이 정부 아닙니까?

미래 세대들에 대한 침묵은 생명 중심 사회적 가치에 반하고 비굴하고 책임 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수동성에 분노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 10대 환경운동가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이끄는 4백만 Z세대들의 기후파업 문제 잘 알고 계시죠? Z세대들에게 '인류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기후변화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사님! 2022년 봄이 되면 과연 이 자리에서 지사님을 또 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로 지사님을 만나 뵈러 가야 할지는 몰라도 2016년 국회의원 시절 산업부 장관에게 원전건설 중단은 7조 5천억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1,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서 일갈·호통을 치시던 그 자세, 그 모습의 지사님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 2021년 3월 1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남진복 의원(농수산위원회) ◎

≪울릉도 카페리오 여객선 도입 관련≫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울릉도·독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무시당한 채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울릉도·독도 주민들의 해상 이동권 실태를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기본 책무마저 내팽개친 정부 당국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의 유일한 섬이자 영토 수호의 상징인 독도를 품은 울릉도는 육지와의 이동수단이 오로지 여객선뿐입니다. 동해는 연간 100일에 이르는 기상특보와 수시로 몰아치는 높은 파도 때문에 1만 톤 이상의 전천후 여객선이 아니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은 고작 400~600톤급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작년에 108일간이나 뱃길이 끊겼고 지난겨울에는 5일 이상 연속 결항도 수차례를 거듭하

였습니다. 모 해운사의 경우는 128일간이나 결항하는 등 울릉주민의 해상 이동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다녔던 2,000톤급 선박도 중형에 불과해서 결항일수를 줄이거나 뱃멀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울릉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중형급 쾌속 대체선과는 별도로 어떤 기상조건에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전천후 여객선의 도입을 죽도록 갈망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금년초 해운당국에서 1만 톤도 훨씬 넘는 여객선을 공모함에 따라 군민과 출향민들이 크게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공모사업 신청자격을 두고 해운사와 당국 간에 법적분쟁이 벌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일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업을 집행하라는 법원의 신속결정에 이어 사업주체인 포항해수청도 3월 11일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해양수산부까지 끼어들어 당초 입장을 번복하겠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격 유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고통쯤이야 안중에도 없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1년에 3분의 1을 결항하는 배가 있을 정도로 숱한 날 발이 묶이고, 근근이 배가 다녀도 차라리 죽기보다 힘든 뱃멀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진정 모른다는 말입니까? 곧 특산물 수송 성수기와 관광시즌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은 그저 앉아 죽으라는 말입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일하다 접시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 끼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했고 감사원도 적극행정 면책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속 결정도 따지고 보면 적극행정을 권고한 것이라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촉구합니다.

보신주의와 소극행정에 찌든 말 같지 않은 변명으로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전천후 여객선 공모사업자 선정 절차를 당장 진행토록 조치하십시오. 묵살은 곧 엄청난 저항을 부른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께 묻습니다.

한 지역의 도민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의 어느 도시가 단 하루만 고립되어도 지금처럼 하셨을까요?

대통령과 도지사를 찾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울릉군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1년  3월 1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성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대구·경북 행정 통합 관련 ≫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지난해 2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는 이대로 희망이 없다.”며 대구와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9년 12월 22일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결정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신청사 이전지 결정 9개월 만인 2020년 9월 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 측 위원장은 대구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태일 교수가 또다시 맡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양식 있는 분들의 태도입니까? 모름지기 지도자는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인구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3만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6년 동안 7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년 각각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떠났습니다. 지사님의 진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통합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통합 연구단에 참여한 지역 내 교수와 전문가들 역시 지난 수십 년간 경북과 대구의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해 발전 전략을 제시했고 용역과제들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희망이 없다'는 경북의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분들 역시 아무런 반성도 없이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가 속한 학과나 학교의 입학 정원을 채우고 제자들의 취업을 위해 전력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을 쓰고, 공론화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은 내팽개치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구·경북 통합 홍보위원이 되어 네 차례의 대토론회라는 통합홍보회를 열었으나 참여자는 온라인 포함 652명으로 시·도민의 0.01%였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물론 통합을 기대하는 지역도 있고 통합하면 유리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은 도로와 지하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도나 시·군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일부 사업이 미진했던 이유를 경북과 대구가 통합되지 않은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 견강부회이고, 책임회피이며, 시·도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제정

하기 위해 '이웃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거름지고 장에 갔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버린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기막힌 정치력에 비추어 볼 때 법률개정과 재정특례 적용은 기대난망입니다. 따라서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되지도 않을 일에 헛발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통합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도지사 손을 떠났다며 관여하지 말라고 하던 공론화위원회가 지사에게 홍보해도 좋다고 하여 홍보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또다시 불공정을 부추긴 것입니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찬성 40.2%, 반대 38.8%의 결과가 나오자 지사님께서 다급해져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사정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지사님의 현장간담회는 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는 위세를 부리는 일입니다.

주민투표법은 제28조제5항에서 '직업·종교·교육 등 특수관계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구·경북 통합 여부에 지사직을 거십시오. 통합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도랑에 든 소'를 자처하는 것은 지사 찬스 아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1년  3월 1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태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지역 중소기업 산업보완 역량 강화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마련 촉구≫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첨단기술의 개발과 함께 국가와 기업 간의 기술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유출에 대한 산업보안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의 유출은 기업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주고, 기업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경제·사회적 피해 또한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술유출의 89.5%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매년 1,000억 이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나 보안의식이 낮은 등 기술보호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어 산업기술의 보호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산자부·중기부 등에서 중소

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정책수립,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곳은 현재 경기도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의 중소기업은 33만 6천여 개에 종사자 80만 7,000여 명에 달하며 도내 기업 대부분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매년 10여 건의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 도내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중요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기업에 대한 현황과 보안역량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기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인들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의지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보안에 대한 의식제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에 산업기술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산자부, 중기부,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북도가 도내 산업보안 컨트롤타워로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

니다.

국내 산업보안학과는 서울·경기·인천·경남 등 네 곳에 있으나 도내에는 아직 산업보안 관련 학과가 전무한 상황인 만큼 학계·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관련 학과 개설 등 도내에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산업보안정책연구회를 구성·운영하였고 도내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세미나·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 정책 제안은 이러한 의회의 활동이 바탕이 된 것인 만큼 경상북도의 도내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 조 례 안(20건) ····· 163

□ 규 칙 안( 1건) ····· 243

□ 동 의 안( 3건) ····· 247

□ 결 의 안( 1건) ····· 267

## 조 례 안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시환 의원('21. 2. 22)

○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배진석 의원('21. 2. 22)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진 의원('21. 2. 22)

○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이동업 의원('21. 2. 22)

○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기보 의원('21. 2. 22)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김상조 의원('21. 2. 22)

○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김상조 의원('21. 2. 22)

○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영길 의원('21. 2. 22)

○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수경 의원('21. 2. 22)

○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무석 의원('21. 2. 22)

○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남영숙 의원('21. 2. 22)

○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신효광 의원('21. 2. 22)

○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신효광 의원('21. 2. 22)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한창화 의원('21. 2. 22)

○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영환 의원('21. 2. 22)

○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박미경 의원('21. 2. 22)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박용선 의원('21. 2. 22)

○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희영 의원('21. 2. 22)

○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정세현 의원('21. 2. 22)

○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남영숙 의원('21. 2. 22)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제품·용역·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2. 경상북도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기관
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보조하는 연구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의 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촉진 및 우선구매 예외)**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보조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없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상

북도의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구매계획 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실적 평가 및 공표)**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판로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6.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외진출 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이나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 공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품질인증)**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5.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사관계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사간 갈등관리 및 상생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2. 노사간 협력 관계 유지 및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3.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 사업
4.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
5.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교육 사업
6. 국내외 선진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7.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2. 업종 · 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도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노동단체,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제7조(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 선정)** ① 도지사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업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노사관계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년정책 평가)**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평가를 위해 경상북도 청년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 및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의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6조의2(청년정책 평가)**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br>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평가를 위해 경상북도 청년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
|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br>② ~ ⑭(생 략) |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br>② ~ ⑭(현행과 같음) |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4.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 지원
2.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별 맞춤 교육 지원
3. 보호 중인 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지원
4.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보,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사업
4.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우회에서 시행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미시 박정희로 155(상모동) 일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테마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마공원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2. 새마을운동 관련 전시·홍보·체험·교육연수
3. 새마을운동의 진흥 및 새마을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전시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전시관 휴관)**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관람료 등)** 테마공원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주차료 포함)는 무료로 한다.

**제7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화기, 흉기 등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주류, 취사도구를 소지한 사람
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동반입장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다른 관람객의 관람 또는 전시관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7. 그 밖에 전시물품의 보존,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및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 및 관람 제한에 관한 안내표지를 전시관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테마공원 내 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란 등 관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음주 및 음식물 섭취행위,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행위
3. 취사 및 쓰레기 투기행위
4. 상업 또는 광고행위, 낙서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공원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7. 수목에 대해 약품투여, 절제 등 손상을 주는 행위
8.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9. 다른 관람객의 관람 또는 공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그 밖에 시설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에 관한 안내표지를 공원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시설)** 도지사는 관람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커피판매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시설 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진흥과 새마을 세계화와 관련한 사업
2. 교육 및 문화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테마공원 내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table>
<tr><th colspan="6">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 사용신청서</th></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br>(단체명)</td><td></td><td>생년월일<br>(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td><td rowspan="2">연락처</td><td>사무실<br>(자택)</td><td></td></tr>
<tr><td>E-mail</td><td></td><td>휴대폰</td><td></td></tr>
<tr><td colspan="2">행사의 명칭<br>(내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 용 기 간</td><td colspan="4">년 월 일( 요일) 부터<br>년 월 일( 요일) 까지</td></tr>
<tr><td colspan="2">사 용 시 설</td><td colspan="4">위 치 :<br>시설명 :<br>면 적 :</td></tr>
<tr><td colspan="2">사 용 인 원</td><td colspan="4">명</td></tr>
<tr><td colspan="2">특 기 사 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4">첨부 1. 행사계획서 1 부<br>2. 기타 필요한 서류</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br><br>년 월 일<br><br>신청인 (서명 또는 인)<br><br>경상북도지사 귀하</td></tr>
</table>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경상북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나. 공무직 근로자

   다. 도 본청, 소속기관(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청원경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사.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적용대상기관"이란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출자·출연 기관"이란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5. "청렴해피콜"이란 도지사가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민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도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공직자 및 적용대상기관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및 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청렴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평가)** ① 도지사는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적용대상기관에 포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의 평가 등급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적용대상기관에서는 평가 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급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해피콜)** ① 도지사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처리)** ① 청렴해피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도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투명성 등 측정
2. 도 소관 민원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② 전담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청렴포상)**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 및 도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의 서예교육 기회 확대와 서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 등과 협력하여 도민의 서예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서예 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해마다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문화와 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서예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
3. 서예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4. 서예 전시회 및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서예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상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 및 농업인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직접 농작물등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도민”이란 「주민등록법」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야생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 광견병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은 제외한다.

7.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및 피해예방활동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피해보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 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경음기, 침입감지 장치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6조(피해 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7조(피해 예방시설 지원 기준)** 피해 예방시설의 지원은 제4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8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등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① 농작물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농작물등의 피해를 산정한 연간 총 피해금액의 50%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인명피해 보상대상)**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인명피해 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4. 로드킬 사고에 의한 경우

**제13조(인명피해액 산정)** 인명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인명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비 : 최대 100만원까지
2. 사망위로금 : 최대 500만원까지
3.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인명피해 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 보상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피해방지단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포상금 : 멧돼지 50,000원, 고라니 50,000원, 청설모 7,000원, 조류 5,000원(마리당)
2. 수렵보험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사회 유지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5. 사회적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사회적농업 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및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 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현황 및 보전실태
2. 농어업유산 관리·보전·활용 방안
3. 농어업유산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4. 다른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농어업유산 관리·보전·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농어업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어업유산의 지정 절차, 지정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어업유산 지정 또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
3. 농어업유산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의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
2. 농어업유산의 교육 및 자원화
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 위한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국제협력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농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3. 농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4. 농작물 경영진단·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연구
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진단·방제법 연구개발
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연구는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국가, 기관,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협약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하고,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농촌지도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가.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및 농촌자원 소득화
   나. 농촌관광 및 치유농업 육성
   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승계 농업인 육성
   라.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도
   마. 농작업환경개선 등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
4.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5.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6. 첨단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7.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마케팅
9. 지역특성 및 현장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인 등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귀촌한 사람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첨단 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

3. 국제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4. 농업연구, 교육, 생산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5.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남북한 농업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2. 그 밖에 도지사가 남북한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도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위치한 법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지역의료원”이란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경영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산업, 건설업,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경상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역 생산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제5조(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홍보)** 교육감은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도청 및 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완료된 도내 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별로 구분하여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2.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3. 도내 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상북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등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우수한 학교, 교원, 학생 또는 독립운동사 교육에 기여한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하 "교육공동체"라 한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합의 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자문 검토
2. 정책 조사·연구
3. 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활용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유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갈등관리 지침)** 교육감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기반 조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및 장애

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스마트기기 제공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원격수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4. 원격수업 지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
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6.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선도·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정착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선도·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선도·시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
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원격수업업무 담당 부서장, 원격수업 관련 기관(부서)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원격수업 관련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 원격수업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원격수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 보궐시 후임자가 잔여 임기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원 역량강화)**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대상)**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교육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교육감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입법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교육규칙
2.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관, 학생생활과장,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의 수립과 시행
5. 성별영향평가 교육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 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3.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4. 응급처치교육 예산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 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규 칙 안 〓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21. 3. 8)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경상북도 의회규칙 제 호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3항제2호 중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를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3조의2(도정에 관한 질문)**<br>①·② (생 략)<br>③ 제2항에 따른 도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생 략)<br>2. 일문일답(一問一答)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br>④·⑤ (생 략) | **제73조의2(도정에 관한 질문)**<br>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1. (현행과 같음)<br>2. ----------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br>④·⑤ (현행과 같음) |

## 〓 동 의 안 〓

○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도지사('21. 2. 22)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도지사('21. 2. 22)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21. 2. 2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

### 1.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취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여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경상북도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 2. 감 면

○ **제1조(생계형 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 ①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감면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1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4.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적용한다.

○ **제2조(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감면)** 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자원시설세액이 재산세 감면액 이하인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액이 재산세 감면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액을 한도로 지역자원시설세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 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자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지방세법」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지역자원시설세액이 인하한 임대료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액이 인하한 임대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합계액을 한도로 지역자원시설세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2.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인 경우
3.「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

## 소상공인 중 취득세 감면제외 대상 업종(제1조제2항 관련)

| 표준산업분류 | 업 종<br>(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 33402,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br>* 단, 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표준산업분류 | 업 종<br>(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851, 852, 853, 854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
| 86 | 보건업<br>* 단, 유사의료업(86902) 및 안마원(96122)은 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94 | 협회 및 단체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br>* 단,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가능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

※ 다만, 위 업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

###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일원

○ 규　　모 : 1,363천㎡(412천평)

○ 사 업 비 : 3,165억원(보상비 630, 조성비 등 2,087, 기타 448)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근 거 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Ⅱ. 추진경위**

○ 2017. 7.19.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지역공약사항 발표

○ 2018. 8.31. : 베어링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발표(국토교통부)

○ 2018.10.29. :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참여 요청(市→公社)

○ 2019. 3.21. : 기본업무협약 체결(道·市·公社)

○ 2019.5.~ 8. : 토질지반조사(9공) 및 입주의향조사(150개 기업) 시행(市)

○ 2019.8.~11. : 입주 수요조사(公社)(73개 기업 129% 확보)

○ 2020. 2.21. : 영주시(지원금/지원시기) 협의 및 사업비 확정

○ 2020. 4. 16. : 타당성 검토 착수(지방공기업평가원)

○ 2020. 8. 21. : 시의회 재정지원 계획 동의안 의결(1,850억원)

○ 2020. 10. 15. : 타당성 검토 완료(지방공기업평가원)

○ 2020. 11. 12. :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公社)

○ 2020. 12. 23. : 이사회 의결(公社)

## Ⅲ. 향후 추진계획

○ 2021. 2. 25. : 시의회 본회의(상임위 2.19.)

○ 2021. 3. : 道의회 의결 및 실시협약 체결

○ 2021. 5.~2023. 5. : 설계용역 착수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 2023. 6.~2027.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Ⅳ. 위치도 및 입지여건

1.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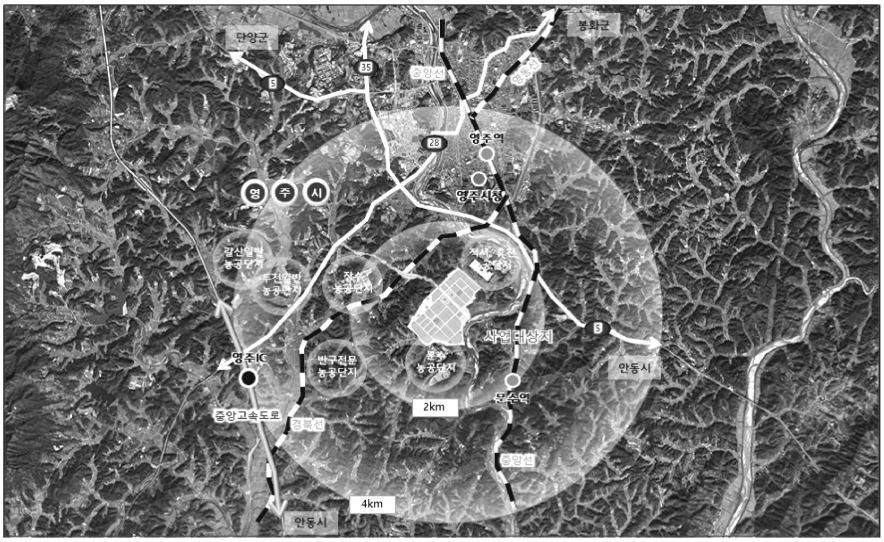

2. 입지여건

○ 대상지는 중앙고속도로 영주 IC에서 13분 거리(약 10km), 국도 5호선과 약 1.8km 거리에 위치하며, 외곽순환도로(계획) 등 진출입 및 접근성이 양호

○ 영주시청 2.5km, 경북도청신도시와 38km(30분 거리)

○ 영주역은 중앙선, 경북선, 영동선과 연결되며 대상지와 3.1km 거리

○ 대상지 주변 4개 농공단지가 조성 및 운영 중이며 베어링아트(일진그룹), 하이테크베어링 시험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산업단지 개발 연계성이 높음

○ 동측에는 지방하천인 서천이 입지

**Ⅴ. 입주수요조사 결과** : 73개 기업, 면적대비 129% 수요 확보

| 구 분 | 분석결과 | 비 고 |
|---|---|---|
| 조사대상 | 5,731개 업체 | 3,300~5,000㎡ 미만 : 9개 업체<br>5,000~10,000㎡ 미만 : 31개 업체<br>10,000~15,000㎡ 미만 : 9개 업체<br>15,000㎡ 이상 : 24개 업체 |
| 입주수요의향 면적(A) | 1,017,022㎡ | |
| 산업시설용지 면적(B) | 787,771㎡ | |
| 입주의향 비율(A/B) | 129% | |

## Ⅵ. 토지이용계획(안)

### 1.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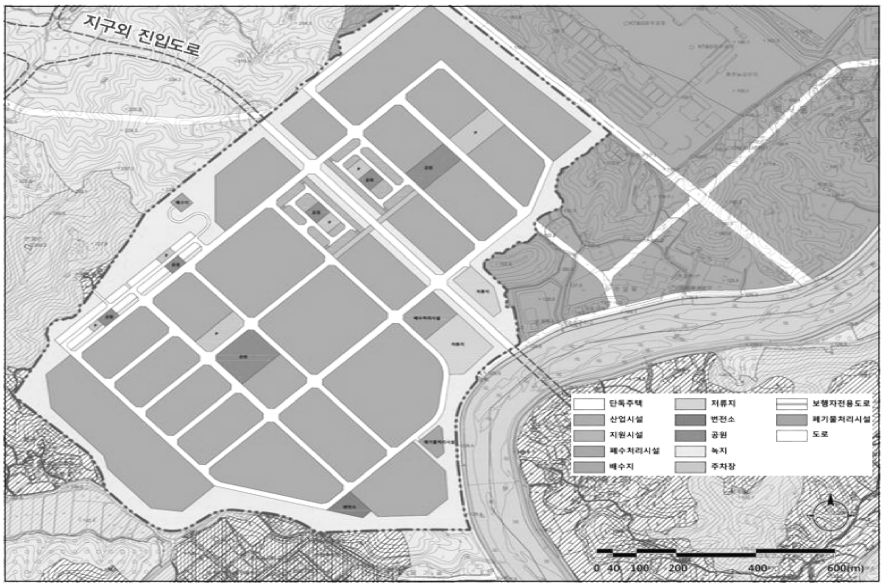


### 2.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합 계** | **1,362,801** | **100.0** | 가처분면적 858,225㎡(63%) |
| 단 독 주 택 | 14,324 | 1.1 | • 이주자, 협의양도인 택지 |
| 산 업 시 설 | 787,771 | 57.8 | |
| 지 원 시 설 | 27,680 | 2.0 | |
| 공 공 시 설 용 지 | 533,026 | 39.1 | |
| 도 로 | 187,880 | 13.8 | • 기준 : 도로율 10% 이상 |
| 주 차 장 | 20,560 | 1.5 | • 기준 : 0.6% 이상 |
| 공 원 | 29,513 | 2.2 | • 기준 : 녹지율 7.5%~10.0% |
| 연 결 녹 지 | 3,960 | 0.3 | |
| 완 충 녹 지 | 246,877 | 18.1 | |
| 보 행 자 도 로 | 450 | 0.0 | |
| 폐수처리시설 | 10,134 | 0.7 | |
| 폐기물처리시설 | 3,524 | 0.3 | |
| 저 류 지 | 24,162 | 1.8 | |
| 배 수 지 | 1,600 | 0.1 | |
| 변 전 소 | 4,366 | 0.3 | |

## Ⅶ.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사업비 | 구성비(%) | 비 고 |
|---|---|---|---|
| **합 계** | **316,500** | **100.0** | |
| **용 지 비** | 62,991 | 19.9 | • 가감정결과 평균 보상비 11.7만원/3.3㎡ |
| 토지보상비 | 48,171 | 15.2 | • 토지, 지장물, 영농손실, 이주정착비 등 |
| 용지부대비 | 14,820 | 4.7 | • 제부담금, 취득세, 재산세, 감정평가 수수료 등 |
| **조 성 비 등** | 208,738 | 66.0 | • 평균 공사비 46만원/3.3㎡ |
| 조사설계비 | 19,105 | 6.0 | • 기본 및 실시설계비, 설계VE, 제영향평가, 감리비 등 |
| 공 사 비 | 189,633 | 60.0 | • 토공, 우수, 오수, 상수, 전기, 포장, 시설공사비 등 |
| **기 타 비 용** | 44,771 | 14.1 | •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예비비, 금융비용 등 |

## Ⅷ. 지원사항

1. 영주시 지원항목

| 구 분 | | 지원기준 | 금액(백만원) |
|---|---|---|---|
| **합 계** | | | 185,872 |
| 국시비 | 문화재조사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4,120 |
| | 공공폐수처리시설 | | 28,611 |
| | 배수지 | | 3,607 |
| 지원금 | |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 149,534 |

※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시 지원금은 단위공사비 변동 등으로 당초보다 9억원 증가된 1,859억원으로 검토되었으며,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인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영주시 시행

| 구 분 | | 지원기준 | 금액 (백만원) |
|---|---|---|---|
| 지구 외 (진입도로) | 외곽순환도로 약 2.15km (市공사분)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16조, 18조 | 28,951 |

## Ⅸ. 사업수지분석

1. 조성원가 : 36.9만원/㎡(122만원/3.3㎡)

※ 평균 분양가격 : 16.8만원/㎡(55만원/3.3㎡)

2. 분양수입 : 144,551백만원

| 구 분 | 면 적 (㎡) | 분 양 가 격 | | 분 양 수 입 | |
|---|---|---|---|---|---|
| | | 만원/㎡ | 만원/3.3㎡ | 백만원 | 구성비 (%) |
| **합 계** | **858,225** | | | **144,551** | **100.0** |
| **단독주택용지** | **14,324** | | | **5,240** | **3.6** |
| 이주자 택지 | 5,968 | 30.01 | 99.21 | 1,791 | 1.2 |
| 협의양도인 택지 | 8,356 | 41.28 | 136.45 | 3,449 | 2.4 |
| **산업시설용지** | **787,771** | **15.12** | **50.00** | **119,150** | **82.4** |
| **지원시설용지** | **27,680** | **45.02** | **148.83** | **12,462** | **8.7** |
| **공 공 용 지** | **28,450** | | | **7,699** | **5.3** |
| 주차장 | 20,560 | 26.26 | 86.83 | 5,400 | 3.7 |
| 폐기물처리시설 | 3,524 | 18.76 | 62.01 | 661 | 0.5 |
| 변전소 | 4,366 | 37.52 | 124.02 | 1,638 | 1.1 |

3. 사업수지 : 13,923백만원(총 사업비 대비 4.4%)

(단위 : 백만원)

| 총수입(A) | | 총비용(B) | 단순손익(A-B) |
|---|---|---|---|
| 분양수입 | 144,551 | 316,500 | 13,923 |
| 국시비 지원 | 185,872 | | |
| 합 계 | 330,423 | | |

※ 사업수익 순현재가치(FNPV) 7,307백만원

## X. 사업타당성 검토

1. 타당성 검토결과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통」으로 판단**함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구 분 | 분석결과 | 비 고 |
|---|---|---|
| 순현재가치(NPV) | △96,858백만원 | 〈타당성 확보 기준〉<br>· NPV 〉 0<br>· B/C 〉 1<br>· IRR 〉 할인율(4.5%) |
| 비용편익비(B/C) | 0.85 | |
| 내부수익률(IRR) | 3.16% | |

3. 재무적 타당성 분석

| 구 분 | 분석결과 | 비 고 |
|---|---|---|
| 순현재가치(FNPV) | 7,307백만원 | 〈타당성 확보 기준〉<br>· FNPV 〉 0<br>· PI 〉 1<br>· FIRR 〉 할인율(4.5%) |
| 수익성지수(PI) | 1.04 | |
| 내부수익률(FIRR) | 10.78% | |

4. 정책적 타당성 분석

-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베어링 산업을 집적화 하여 미래 신사업의 생산기술, 설비,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
- 당해 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판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건설 과정〉

| 구 분 | 생산유발효과 (억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 (억원) | 소득유발효과 (억원) | 고용유발효과 (명) |
|---|---|---|---|---|
| 경 북 | 3,022 | 1,167 | 758 | 2,248 |
| 전 국 | 4,864 | 1,688 | 1,012 | 3,151 |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제유발효과 분석 결과-운영 과정〉

| 구 분 | 경제유발효과 종합 (연간, 억원) | 생산유발효과 (연간, 억원) | 부가가치유발 효과 (연간, 억원) | 인구증가효과 (명) |
|---|---|---|---|---|
| 영주시 | 834 | 690 | 144 | 11,002 |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XI. 재원 조달방안

○ **총 사업비 3,165억원(지원금 1,859, 자체재원 591, 공사채 715)**

※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시 공사채 발행규모를 715억원으로 검토

○ 공사채발행한도 검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율 | 비 고 |
|---|---|---|---|
| 순 자 산 | 830,204 | |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부채 총계 | 299,579 | 36% | |
| 기존 부채 | 228,061 | 27% |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금번 차입 | 71,518 | 9% | |

※ 2020년도 행정안전부 부채비율 적정기준(300%) 적용 시 공사채 발행 가능

## XII. 사업 시행 의견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지역공약사업의 일환으로 7개 후보지 중 경북권역에 베어링 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을 육성하고 연관 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성과 정책성이 타당성 기준에 부합하고 종합적으로 '보통'으로 분석되어 본 사업을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취득재산 : 406,703,231천원**

- 토 지 : 7,276㎡ 1,053,417천원
- 건 물 : 146,345㎡ 405,649,814천원

1)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부지 취득(4건)

| | | |
|---|---|---|
| - 안계초등학교 | 1,215㎡ | 47,628천원 |
| - 이서초등학교 | 74㎡ | 8,473천원 |
| -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 2,089㎡ | 804,265천원 |
| - (가칭)산동유치원 | 3,588㎡ | 110,510천원 |

2)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부지 취득(1건)

| | | |
|---|---|---|
| -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 310㎡ | 82,541천원 |

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41건)

| | | |
|---|---|---|
| - 신광초등학교 | 3,254㎡ | 8,785,800천원 |
| - 연일초등학교 | 8,898㎡ | 24,024,600천원 |
| - 청림초등학교 | 3,699㎡ | 9,987,300천원 |
| - 강동초등학교 | 1,412㎡ | 3,812,400천원 |
| - 경주여자고등학교 | 5,761㎡ | 15,554,700천원 |
| - 불국사초등학교 | 3,575㎡ | 9,652,500천원 |
| - 아화초등학교 | 1,626㎡ | 4,390,200천원 |
| - 양남중학교 | 2,021㎡ | 5,456,700천원 |
| - 천북초등학교 | 1,484㎡ | 4,006,800천원 |
| - 김천다수초등학교 | 3,026㎡ | 8,170,200천원 |
| - 아포초등학교 | 2,648㎡ | 7,149,600천원 |
| - 안동동부초등학교 | 3,932㎡ | 10,616,400천원 |
| - 안동용상초등학교 | 4,383㎡ | 11,834,100천원 |
| -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 2,294㎡ | 6,193,800천원 |
| - 금오공업고등학교 | 2,016㎡ | 5,443,200천원 |
| - 영주서부초등학교 | 5,860㎡ | 15,822,000천원 |
| - 금호초등학교 | 2,279㎡ | 6,153,300천원 |
| - 영천여자고등학교 | 2,527㎡ | 6,822,900천원 |
| - 임고초등학교 | 1,450㎡ | 3,915,000천원 |
| - 상주중학교 | 5,064㎡ | 13,672,800천원 |
| - 경산초등학교 | 3,312㎡ | 8,942,400천원 |
| - 진량초등학교 | 4,284㎡ | 11,566,800천원 |

| | | |
|---|---|---|
| - 안계초등학교 | 3,490㎡ | 9,423,000천원 |
| - 청송초등학교 | 4,839㎡ | 13,065,300천원 |
| - 영양초등학교 | 3,250㎡ | 8,775,000천원 |
| - 영해초등학교 | 5,446㎡ | 14,704,200천원 |
| - 이서초등학교 | 3,056㎡ | 8,251,200천원 |
| - 고령초등학교 | 3,644㎡ | 9,838,800천원 |
| - 성주중학교 | 5,808㎡ | 15,681,600천원 |
| - 왜관중앙초등학교 | 2,771㎡ | 7,481,700천원 |
| - 예천남부초등학교 | 4,653㎡ | 12,563,100천원 |
| - 봉화초등학교 | 2,057㎡ | 5,553,900천원 |
| - 울진중학교 | 6,107㎡ | 16,488,900천원 |
| - 울진초등학교 | 6,533㎡ | 17,639,100천원 |
| - 울릉초등학교 | 4,703㎡ | 12,698,100천원 |
| -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 2,527㎡ | 8,250,438천원 |
| - 이동초등학교 | 969㎡ | 3,732,372천원 |
| - (가칭)산동유치원 | 2,774㎡ | 8,266,076천원 |
| - 문경중학교 | 2,000㎡ | 7,400,000천원 |
| - 경산고등학교 | 969㎡ | 3,858,106천원 |
| - 와촌초등학교 | 600㎡ | 2,964,160천원 |

4)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물 취득(2건)

| | | |
|---|---|---|
| -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 4,354㎡ | 12,696,647천원 |
| -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 990㎡ | 4,344,615천원 |

□ **처분재산 : 6,885,737천원**

- 토 지 : 56,178㎡ 5,935,900천원
- 건 물 : 4,997㎡ 812,007천원
- 공작물 : 11식 117,039천원
- 입목죽 : 231주 20,791천원

1) 폐교재산 매각(4건)

- (구)일월초등학교 청북분교장 15,863㎡ 388,525천원
- (구)입암초등학교 청일분교장 17,810㎡ 375,143천원
- (구)재산중학교 17,822㎡ 443,637천원
- (구)울릉중학교(이전 후 유휴재산) 9,922㎡ 5,678,432천원

# 결 의 안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춘우 의원('21. 3. 9)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3월 16일**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요구 일시**

○ 2021. 4.23.(금) 13:40(1차 본회의)

○ 2021. 5. 6.(목) 11:00(2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 **주요내용** :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답변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321회 임시회, 제322회 임시회)**

●

2021. 4. 인쇄 / 2021. 4.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

<비매품>